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の 役

—朝鮮·琉球·日本에 있어서 大明外交儀禮의 관점에서—

구와노 에이지(桑野榮治)

머리말	1) 한성 탈환의 皇恩에 감사하는 望闕禮
I. 조선 전기의 동아시아 국제환경	2) 한성 還都 후 南別宮에서의 望闕禮
1. 명과 조선의 관계	3) 전시하 의례 실시상의 문제점
2. 명과 琉球의 관계	4) 동아시아 세계의 조선과 명
3. 명과 일본의 관계	4. 임진왜란 후의 望闕禮
II. 조선 宣祖代의 의례와 외교	1) 朝賀禮의 정체
1. 宣祖의 책봉의례	2) 宣祖 즉위 40년째의 望闕禮
2. 임진왜란 이전의 望闕禮	III. ‘日本國王’ 豊臣秀吉의 책봉의례
1) 명 사신의 來朝와 冬至의 望闕禮	1. 일본국왕 책봉사의 復命報告
2) 國忌에 수반하는 朝賀禮의 順延 조치	2. 景輒 玄蘇와 루이스·프로이스의 ‘증언’
3. 임진왜란기의 望闕禮	맺음말

머리말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제2분과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임진왜란(文祿·慶長の 役)에 관한 연구사 정리를 살펴보고 학계에 귀중한 성과를 제공하였다.¹⁾ 동시에 이들 성과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후 검토해야 할 과제에 어느 정도 견해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이후의 연구과제로서 1)조선 즉·명즉의 군량 공급 시스템 규명, 2)피로인의 실패와 송환 시스템 해명, 3)왜성 연구, 4)전쟁으로 인한 조선

1) 六反田豊 / 田代和生·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北島万次,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 ; 朴哲暁,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研究の現況と課題>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 編, 2005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篇)>> (同委員會))

사회의 변화, 5)豊臣 정권의 전략적 사고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6)동아시아 국제질서, 특히 ‘책봉체제’에 관한 재검토를 든다. 물론 이 순서가 과제로서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일본 측 위원의 보고서에는 조선의 군량조달을 주제로 하는 논고가 게재되어 있으며,²⁾ 한반도에서 군량 공급 시스템을 밝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연구 과제로서 1)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국제정세, 2)일본과 조선왕조의 수군 전력, 3)의병운동, 4)조선군의 병력 동원 체제, 5)임진왜란의 전투지역 조사, 6)降倭·被擄人·문화재 약탈, 7)임진왜란기의 점령정책과 민중의 대응·생활상, 8)상호 간의 문화 전파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 순서 역시 과제로 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 측 위원의 보고서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인식을 비교한 논고가 실려 있으며,³⁾ 당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제1기 보고서가 세간에서 널리 문제되던 2005년의 시점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 입장에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혹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관한 문제를 금후의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다. 제1기에서 橋本雄씨가 조선국왕사와 ‘일본국왕’(室町殿)의 외교의례에 주목했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⁴⁾ 외교의례가 “당사국의 도의적,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반영하는 실용의 거울이었다”⁵⁾면, 외교의례의 관점에서 임진왜란기의 동아시아 국제환경을 조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 전기(대략 15~16세기에 해당)의 동아시아 국제환경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2) 六反田豊,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開戦初期における朝鮮側の軍糧調達とその輸送>(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編, 전개 보고서, 수록).

3) 鄭求福, <壬辰倭亂の歴史的意味－壬辰倭亂に對する韓・日兩國の歴史認識>(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編, 전개 보고서, 수록).

4) 橋本雄, <朝鮮國王使と室町幕府>(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編, 전개 보고서, 수록).

5) 로날드 토비(速水融他 번역)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創文社, 1990년 9월. 原著는 Ronald P.Toby.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bu*.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第5章 外交儀禮の鏡を覗く－理念の世界を映し出す姿見> 138

I. 조선 전기 동아시아의 국제환경

1. 명과 조선의 관계

조선왕조(1392~1897)는 건국 후 즉시 명 태조 洪武帝(朱元璋, 재위 1368~98년)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冊封体制’⁶⁾에 참가하고 의례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1401년(太宗 원년)에 惠帝 建文帝(재위 1398~1402)가 제3대 조선국왕 太宗(재위 1400~18)에게 誥命(辭令書)과 金印을 하사하고 책봉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靖難의 變(帝位를 둘러싼 내란)을 거쳐서 옥좌에 올랐던 成祖 永樂帝(재위 1402~24년)도 역시 2년 뒤인 1403년에 다시 太宗을 ‘조선국왕’으로 책봉하였다.⁷⁾ 제3대 永樂帝는 洪武帝의 대외정책을 계승하도록 적극적인 조공 권유책을 취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에 노력하고 있었다⁸⁾ 이념상 조선국왕은 명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華夷秩序’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에 처해 있던 조선국왕이 매년 正朝(元旦)·聖節(명 황제 생일)·千秋節(명 황태자 생일) 외에 동지 때도 조공사절을 파견했던 것은 주지의 사

-
- 6)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국제관계의 특징을 표현하는 ‘책봉체제’에 관해서는 당장은 2007.7 《西嶋定生 東アジア史論集(第3卷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岩波書店) <第1部 3 冊封體制と東アジア世界> 95~101 참조. 다만 이러한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재검토도 많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夫馬進, <明清中國による對朝鮮外交の鏡としての對ベトナム外交 - 冊封問題と《問罪の師》を中心> (紀平英作 編, 2007.3 《グローバル化時代の人文學 - 對話と寛容の知を求めて(下)共生への問い》京都大學學術出版會) 238~244에 따르면, 安南에서 ‘僞勅’ ‘僞年號’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明은 安南의 朝貢을 계속 받아들였고, 또한 同 <1609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對琉球外交 - 東アジア四國における冊封, 通信そして杜絶> (《朝鮮研究會論文集》 第46集, 2008년 10월) 7~10에 따르면, 清代의 책봉국은 朝鮮·越南(安南)·琉球의 3국뿐이었으며, 겨우 暹羅를 추가한 4國에 불과하다고 한다.
- 7) 末松保和, 1996.10 《高麗朝史と朝鮮朝史(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5)》(吉川弘文館)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초판은 京城帝國大學文學會 編, 1941.11《史學論叢》 第2 (岩波書店)) <第十一章 誥命印章の獲得> 234~237. 李鉉淙 <對明關係> (國史編纂委員會 編, 1974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同委員會, 서울)) 331~332. 孫承喆, 2006.2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景仁文化社, 서울). 구관의 일본어 譯은 鈴木信昭 監譯, 1998.8 《近世の朝鮮と日本 - 交隣關係の虛と實》(明石書店)) <제1장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교린체제> 35~38
- 8) 佐久間重男, 1992.2 《日明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第一編 第二章 永樂帝の對外政策と日本> 98~99 ; 檀上寛, <明初の海禁と朝貢 - 明朝專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森正夫他 編, 1997.10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中國史の基本問題4)>》(汲古書院)) 223 ; 同, <初期明帝國體制論>(杉山正明他, 1997.11 《岩波講座世界歴史11(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岩波書店)) 318~321

실이다. 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1531년(中宗 26)에는 종래의 正朝使를 폐지하고 冬至使가 신설되었으며, 聖節使·千秋使·冬至使를 명에 파견하는 1년 3공의 대명외교체제로 이행하였다.⁹⁾

이 1년 3貢 체제에 대하여 아직도 연구자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 예를 들면, 朴成柱씨는 冬至使가 中宗 26년부터 파견됐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16세기 후반부터 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貢이 규례화된 것”이라고 한다. 또 全淳東 씨는 正朝使·冬至使·聖節使에 “中宗 26년(1531) 이후부터는 황태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千秋使도 함께 추가되어 ‘1년 4使’가 정례로 되었다”고 한다.¹⁰⁾ 그러나 양자 모두 잘못이다. 조선 초기의 遣明使節은 正朝·聖節·千秋使의 1년 3공, 조선 중기인 中宗 26년 이후는 聖節·千秋·冬至使의 1년 3공이다. 이러한 오해가 생긴 까닭은 아마도 16세기 朝明關係의 실태에 접근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니면 조선 후기의 사역원 역관인 金指南·金慶門 부자가 편찬한 《通文館志》(1720년 간행)에 “國初, 매년 파견하는 朝京使에 冬至·正朝·聖節·千秋의 四使가 있다”고 한 조문¹¹⁾을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

9) 1587년(萬曆 15)에 완성된 明代 國制總覽인 1977.7 《萬曆大明會典》(新文豐出版公司, 台北) 卷 105, 禮部63 朝貢1 東南夷上 朝鮮國條에 “永樂初賜印·誥自後每歲聖節·正旦〔嘉靖十年(=中宗 26년), 外夷朝正旦者俱改冬至〕·皇太子千秋節, 皆遣使奉表朝賀, 貢方物, 其餘慶慰·謝恩無常期”라고 되어 있으며, 中宗 26년 3월에는 “每歲元朝(正旦)의 (朝)貢은 동지 전으로 옮겨 入賀하라”는 聖旨가 조선에 전달되었다(《中宗實錄》 권70, 26년 3월 9일 甲午條. 사료 중의 [] 안은 割註, 이하 같음).

10) 朴成柱, 2000.12 <조선 초기 遣明使節에 대한 일고찰> 《慶州史學》 第19輯 慶州(曹圭益他 編, 2006.9 《연행록연구총서6(역사)》(學古房, 서울)에 再錄) 153; 全淳東, <15세기 조선과 명의 문물 교류-중국문물의 유입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會 編, 2003.10 《韓國史의 國際環境과 民族文化》(景仁文化社, 서울) 93. 그밖에 朴元煥, 2002.3 《明初朝鮮關係史研究》(一潮閣, 서울) <15세기 朝鮮과 明의 關係> 294도 “조선은 후일 中宗 26년(嘉靖 10년, 1531)부터 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사가 된다”고 하며, 16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그린 金翰奎,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鄭杜熙他 編, 2007.12 《임진왜란-동아시아 삼국전쟁》(휴머니스트, 서울). 일본어 譯은 金文子 監譯, 2008.12 《壬辰戰爭-16世紀 日·朝·中의 國際戰爭》(明石書店) 312도 역시 “조선은 賀正使와 聖節使·千秋使 등 1년 3사를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冬至使를 추가하여 1년 4공을 강행했다”고 서술했다. 한편, 조선시대의 조공·책봉관계를 정리한 權善弘, <조선시대 사대관계와 책봉체제> 韓日關係史硏究論集編纂委員會 編, 2005.6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4)》(景仁文化社, 서울) 65에서 조선은 명으로부터 “1년 3~4공이라는 유례없이 파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11) 朝鮮史編修委員會 編, 1944.3 《通文館志(朝鮮史料叢刊 第21)》(朝鮮總督府, 京城). 底本은 1888년에 重修刊行된 서울大學校奎章閣藏本) 권3, 事大上, 赴京使行條. 이 조문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全海宗, 1970.5 《韓中關係史研究》(一潮閣, 서울) <清代 韓中朝貢關係考> 61에서는 “李朝 初期의 對明使行에는 冬至·正朝·聖節·千秋의 四行이 定期的”이었다고 한다.

로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조공사절을 명나라로 파견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經國大典》(성종 16년, 1485)에는 “正朝·冬至·聖節·千秋節에 殿下는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望闕禮를 올린다”고 명기되어 있으며,¹²⁾ 왕조정부의 儀禮書인 《國朝五禮儀》(성종 5년, 1474)에는 이 儀註(儀禮의 式次第)를 嘉禮의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다.¹³⁾ 조선 국왕은 正朝·冬至·聖節·千秋節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왕도 한성의 왕궁에서 명나라 황제를 遙拜하는 궁중의례(望闕禮라고 한다)를 거행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 궁중의례는 일찍이 명 태조 洪武帝가 1369년(洪武 2)에 ‘蕃國禮’로서 제정했던 “元正·冬至·上國 聖壽節에 望闕하며 축하를 드리는 의식”의 수용과 실천이다.¹⁵⁾ 이미 고려 恭愍王(재위 1351~74)은 1372년 동지 때 명나라 관복인 冕服을 입고 이 요배 의례를 거행했으며, 백관과 함께 만세를 삼창하고 있다.¹⁶⁾ 望闕禮의 의의는 일찍이 제9

- 12) 《經國大典》 卷3, 禮典, 朝儀條에 “正·至·聖節·千秋節, 殿下率王世子以下, 行望闕禮” 라고 되어 있다. 李成茂씨는 이 ‘朝儀條’를 근거로 “조선은 사대의 표현으로 일년에 네 차례의 사신(正朝·冬至·聖節·千秋)을 보내고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正朝·冬至·聖節·千秋의 望闕禮에 관한 규정이며, 朝貢使節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同, 2004.8 《개정증보 조선의 사회와 사상》 (一潮閣, 서울) <제1부 제1장 朝鮮時代の 王權> (조판은 朝鮮時代史學會 編, 1993.3 《東洋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서울)) 28. 대체로 조선정부가 명나라에 冬至使를 파견하는 것은 중종 26년 이후의 일이며, 《經國大典》에는 冬至使 자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13) 《國朝五禮儀》 卷3, 嘉禮,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條 및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條
- 14) 李範稷, 1991.9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五禮를 中心으로> (一潮閣, 서울) <第2章 III 世宗朝 《五禮》의 分析> 327~329 ; 桑野榮治, 2001.3 <朝鮮初期의 對明遙拜儀禮 -その概念의 成立過程을 中心に> 《久留米大學比較文化年報》 第10輯 ; 同, 2002.3 <朝鮮世祖代の 儀禮と王權 - 對明遙拜儀禮と園丘壇祭祀を 中心に>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第19号 ; 同, <朝鮮成宗代の 儀禮と外交 - 《經國大典》 成立期の 對明遙拜儀禮> (《同》 第20号, 2003년 3월) ; 同, <高麗末期의 儀禮と國際環境 - 對明遙拜儀禮의 創出> (《同》 第21号, 2004년 3월). 이들 4편의 논문은 증보·수정된 후 桑野榮治, 《高麗末期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 對明外交儀禮의 基礎的研究》 (2001~2003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C)(2)] 研究成果報告書, 2004년 2월)에 수록했다. 또한 桑野榮治, 2005.10 <正朝·冬至の宮中儀禮を通してみた15世紀朝鮮의 儒教と國家 - 朝鮮燕山君代の 對明遙拜儀禮を 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4集 ; 同, 2007.3 <朝鮮中宗代における 對明遙拜儀禮 - 16世紀前半の朝鮮と明·日本>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第24号 참조.
- 15) 《明集禮》 (《景印 文淵閣四庫全書》 第650冊, 台灣商務印書館, 台北, 1983년 6월, 수록) 卷30, 賓禮1, 蕃王朝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條. 《萬曆大明會典》 卷58, 禮部16, 蕃國禮, 聖節正旦冬至蕃國望闕慶祝儀條. 桑野榮治, 전계 <高麗末期의 儀禮と國際環境> 76~79. 또 岩井茂樹, 2005.3 <明代禮制霸權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第85号 132~133
- 16) “冬至, 王具冕服, 率百官, 向闕拜賀, 山呼萬歲, 後百官又行本朝賀禮”(《高麗史》 권67, 禮志9, 嘉禮,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恭愍王 21년 11월 14일 丁巳條). 桑野榮治, 전계 <高麗末期의

대 조선국왕 성종(재위 1469~94)이 秘書役인 承政院에 이르기를, “내가 望闕禮를 행할 때 몸은 비록 이곳 조선에 있지만, 몸소 朝天하는(皇帝를 拜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말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⁷⁾ 원래 명절이 되면 ‘蕃王’인 조선 국왕이 몸소 황제가 기거하는 北京으로 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拜禮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득이 조선의 왕궁에서 紫禁城에 거처하는 명 황제를 요배하는 것으로 그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명과 琉球의 관계

이어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책봉체제 아래 있었던 琉球國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洪武帝는 당초 1372년(洪武5)에 浦添을 거점으로 하는 中山王 察度(삿토, 재위 1350~95년)가 일찍부터 入貢 권고에 응했으므로(다만 中山王의 冊封은 1404년 제2대 武寧), “大琉球國의 朝貢은 不時(=隨時)로 한다”고 우대했으나, 후일 琉球使臣이 福建省에서 일으켰던 살인사건을 이유로 1475년(성화 11년)에 憲宗 成化帝(재위 1464~87)는 琉球의 貢期(조공 빈도)를 2년 1공으로 제한했다.¹⁸⁾ 그 후 琉球 국왕이 1년 1공의 주청을 거듭한 결과 1507년(正德 2)에 겨우 1년 1공의 貢期를 얻기는 했지만, 1522년(嘉靖 원년)에 다시 2년 1공을 하명받게 된다.¹⁹⁾ 조선의 1년 3공과 비교하면 그 대우의 격차가 현격하다.²⁰⁾

儀禮と國際環境 > 75~76.

- 17) “傳于承政院曰, (中略)予行望闕禮時, 身雖在此, 豈有異於親自朝天乎, (後略)” (《成宗實錄》 권 284, 24년 11월 8일 己亥條). 桑野榮治, 전개 <朝鮮成宗代の儀禮と外交> 107
- 18) “祖訓, 大琉球國朝貢不時, 王子及陪臣之子, 皆入太學(=國子監)讀書, 禮待甚厚, (中略)永樂以來, 國王嗣立, 皆請命冊封, 後惟中山王至, 中山王世稱尙氏, 諭令二年一貢, 每船百人, 多不過百五十人, 貢道由福建閩縣, (後略)” (《萬曆大明會典》 卷105, 禮部63, 朝貢1, 東南夷上, 琉球國條). 佐久間重男, 전개서 <第一編 第四章 明代の琉球と中國との關係> 174~177 ; 邊土名朝有, 1998.7 《琉球の朝貢貿易》 (校倉書房) <第一部 第一章 貢期の制定> 23~24 ; 同 <第一部 第三章 貢期の制限> 64~66. 또 《明實錄》과 《歷代寶案》을 토대로 琉球의 朝貢頻度を 정리한 岡本弘道, 1999.3 <明朝における朝貢國琉球の位置付けとその變化 - 14・15世紀を中心にして> 《東洋史研究》 第57卷 第4号, 4~6에 따르면, 1480년대 이후는 거의 2년에 1번의 朝貢으로 안정되었다.
- 19) 佐久間重男, 전개서 <第一編第四章 明代の琉球と中國との關係> 178. 邊土名朝有, 전개서 <第一部 第三章 貢期の制限> 76. 뒷날 薩摩島津氏에 의한 琉球侵攻 직후의 貢期는 10년 1공이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夫馬進, 전개 <1609年, 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國・朝鮮の對琉球外交> 18~22가 이 통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0) 村井章介씨는 《明史》 外國伝을 기초로 <明에 대한 諸國의 入貢表>를 작성하고, 조공 횟수가 171회인 琉球가 제1위이며,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조공횟수”였다고 한다(同, 1997.10

또 1561년(嘉靖 40)에 冊封使로 琉球에 갔던 郭汝霖의 《重編使琉球錄》에 따르면, 朝鮮과 安南(현재 베트남 북부)으로 과건되는 冊封使가 대략 正7品(副使는 從7品)임에 비하여 琉球와 占城(참파, 현재 베트남 남부)의 경우는 從7品(副使는 正8品)이므로 琉球國王은 朝鮮國王보다 격하되어 취급받은 것이 된다.²¹⁾

다만 이 조공 빈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며, 조선왕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조공(琉球에서는 進貢이라고 한다)사절 이외에 謝恩使·慶賀使·進香使 등 임시사절도 과건하고 있다.²²⁾ 예를 들면, 《歷代寶案》에는 제1 尙氏王統, 2대 尙巴志(쇼하시, 재위 1422~39년)가 1425년에 등극한 宣宗 宣德帝(재위 1425~35)를 축하하면서, “신하 尙巴志는 멀리 蕃國에 기거하면서 마음은 달려가 遙賀”한다는 내용의 表文(황제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을 보냈다.²³⁾ 외교문서의 상투적인 문구이기는 하지만, 직접 紫禁城으로 가서 황제를 알현할 수 없는 ‘蕃王’ 尙巴志의 심정은 望闕禮를 올리는 조선 국왕 성종의 심정과 상통한다.

《海から見た戦國日本 -列島史から世界史へ》(筑摩書房) 67. 村井씨가 작성한 入貢表는 秋山謙藏 《日支交渉史研究》(岩波書店, 1939년 4월) <本論 第六篇 第五章 勘合貿易と密貿易> 552를 참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표에 따르면 조선은 30회(10위), 일본은 19회(13위)이며, 高良倉吉씨는 이 데이터를 기초로 “明朝에 대하여 琉球는 아시아 최대의 조공무역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同, <琉球の形成と東シナ海世界> 大石直正他, 2001.12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日本の歴史14)》(講談社) 193~194). 그러나 원칙상 2년 1貢의 琉球가 원칙상 1년 3貢인 조선의 朝貢 회수를 이처럼 대폭적으로 상회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朝鮮王朝實錄》을 조사했던 朴成柱씨에 따르면, 조선 초기(太祖 원~成宗 25년)에는 正朝使 102회(兼行 14회), 聖節使 96회(兼行 8회), 千秋使 61회(兼行 4회)의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통상의 조공사절로 한정해도 조선에서 명으로 약 100년 동안 함께 259회가 과건되었으며, 기타의 임시사절, 예를 들면 謝恩使의 과건 회수는 150회(兼行 15회)를 상회한다(同, 전계 <조선 초기 遣明使節에 대한 일고찰> 153~156). 그런 까닭에 村井씨가 작성한 <明に對する諸國の入貢表>는 당시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1) 孫薇, <冊封·朝貢について－中琉の冊封·朝貢關係を中心に> 法政大學沖繩文化研究所 編, 1991.3 《沖繩文化研究》 17, 57~58; 郭汝霖(原田禹雄 譯注), 2000.4 《重編使琉球錄》(榕樹書林) 下, 群書質異, 使職要務, 176. 원문은 “(前略) 按我朝封錫藩王之制, 如按南·朝鮮, 則遣編修·給事中等官爲使, 占城·琉球, 則遣給事中·行人等官爲使, (後略)”(同, 293~294). 다만 金龍基, 1972.9 <朝鮮初期의 對明朝貢關係考> 《釜山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4집, 155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과건된 明使는 正5品부터 從6品の 하급관리였으며, 75회의 明使 중에서 48회는 宦官이었다.
- 22) 野口鐵郎, 1977.1 《中國と琉球》(開明書院) <明代琉中往來表>; 赤嶺紀, 1988.12 《大航海時代の琉球》(沖繩타임즈社) <進貢船一覽表> 참조.
- 23) “(前略) 臣尙巴志, 恭遇聖君嗣登天位, 遠處蕃維, 心馳遙賀, 仰紫宸三祝, 祈聖壽以齊天, (後略)”(《歷代寶案》 제1집, 卷12, 表奏文, 洪熙 원년 윤7월 17일자, 宣德帝宛中山王上表文). 텍스트로는 沖繩縣立圖書館 編, 1992.1 《歷代寶案 校訂本》 제1책 (沖繩縣教育委員會)를 이용했다. 이 上表文에 관해서는 高良倉吉, 전계 <琉球の形成と東シナ海世界> 188에서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국왕이 매년 명절에 망궐례를 행했던 것처럼, 琉球 국왕도 역시 같은 궁중의례를 올리고 있었을까? 史料의 제약으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琉球 왕권의 관점에서 일찍이 豊見山和之씨는

“왕은 紅錦衣를 갖추고, 平天冠을 쓰고, 一僧과 마주앉아 望闕의 禮를 행한다”(《朝鮮王朝實錄》 1546년)라고 하듯이, 국왕은 승려와 함께 ‘望闕의禮’=紫禁城 遙拜를 올리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²⁴⁾ 豊見山씨가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中宗 37년(1542) 琉球國에 표착하여 4년간 생활했던 제주 표류민 朴孫 등 12명으로부터 들은 琉球의 풍속으로, 확실히 琉球國 “왕은 붉은 비단옷을 입고, 제례용 平天冠을 쓰고, 승려와 마주앉아 望闕의 禮를 행한다”고 기록하고, “大明을 섬기기 때문에 이 예를 올리는 것이다”고 해설하였다.²⁵⁾ 豊見山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實錄의 기사는 계속해서 “百官은 관직의 서열에 따라 뜰아래 나란히 서서 배례한다”고 기록하고, 표류했던 제주도 朴孫 일행도 반열의 뒤에서 배례를 행했다고 한다.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는 朴孫 일행도 역시 琉球의 백관과 마찬가지로 명 황제의 신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늦어도 16세기 중반 무렵까지는 琉球 국왕이 ‘蕃王’으로서 조선의 望闕禮와 유사한 궁중의례를 首里城 안의 성스러운 광장 ‘御庭(우나)’에서 거행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제주 표류민이 首里城에서 참가했던 ‘望闕의 禮’의 경우, 그 계절에 관해서는 《朝鮮王朝實錄》에 기록이 없다. 그런데 豊見山씨는 薩摩藩의 琉球 침공(1609년) 이전의 古琉球 때 “초하루와 보름마다 首里城 正殿 앞에서 官人은 位階에 따라 정렬하여 중국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례를 도입하고”, “聖節(중국 황제의 생일)과 정월 초하루에 중국에서 하사한 관복을 입고 의례를 거행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⁶⁾ 아마도 전자는 매달 초하루의 朝賀儀禮이며, 후자가 聖節·正朝(그리고 아마도 冬至)의 望闕禮를 의

24) 豊見山和之, 2004.6 《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吉川弘文館) <Ⅲ 第1章 祭天儀禮と宗廟祭祀からみた琉球の王權儀禮> 234

25) “(前略) 注書尹潔因朴孫等之言, 記琉球國風俗, 其略曰, (中略)國王所御之殿, 高五層, 以板覆之, 王具紅錦衣, 戴平天冠, 與一僧對坐, 行望闕禮〔事大明, 故爲此禮云〕, 百官以職次, 分班拜於庭下, 立朴孫等於百官班後, 令一時拜曰, 爾國亦爲大明臣, 不可不拜云”(《明宗實錄》 권3, 원년 2월 1일 戊子條).

26) 豊見山和之, 전계서 <Ⅲ 第1章 祭天儀禮と宗廟祭祀からみた琉球の王權儀禮> 234; 安達義弘, 1997.3 <琉球國王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冊封・朝貢體制> 《久留米大學比較文化研究》 第19輯, 60~61도 이 聖節·正朝의 王朝儀禮에 주목했다.

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豊見山씨가 근거로 했던 《歷代寶案》에 따르면, 일찍이 洪武帝로부터 하사받은 관복이 심하게 손상되어 “聖節·正朝 등의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²⁷⁾ 尙巴志가 명나라 禮部 앞으로 보낸 이咨文은 1436년(正統 원년) 당시 琉球의 왕권의례의 실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禮部の咨文에 주목했던 邊土名朝有씨는 ‘聖節·正朝 등의 행사’에 대하여,

이것은 洪武 2년에 정해진 “聖節正旦冬至蕃國望闕慶祝儀”(《大明會典》 卷58, 1006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中略) 琉球王 및 신하가 冠帶를 하사받은 洪武 31년 이후부터는 관복을 갖춘 정식 의례가 행해졌던 것이다.

라고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²⁸⁾ 어느 것이든 단편적인 사료이기는 하지만, 뒷날 18세기 전반에 성립한 《琉球國由來記》(1713년) 《琉球國舊記》(1731년)가 보여주듯이 薩摩藩 지배하의 근세 琉球에 있어서도 冬至·元旦·정월 15일의 王府儀禮는 3대 의례로서 매우 중시되었으며, 중화황제가 사는 紫禁城에 대한 요배의례를 강조하게 되었다.²⁹⁾ 이러한 王府儀禮에서는 외교문서 작성에 정교하여 儀禮에 익숙하던 職能集團 ‘閩人三十六姓’이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다.³⁰⁾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구 국왕은 正朝·聖節 등 명절에는 帝都인 北京 紫禁城을 遙拜하는 의례, 즉 望闕禮를 琉球 나침으로

27) “(前略) 一件, 朝服事, 洪武年間, 欽蒙太祖高皇帝給賜本國各官冠·笏·公服等件, 欽遵奉受外, 今照, 本國各官朝服已經多年, 俱以朽壞無存及不能裁製, 凡遇聖節·正旦等事, 行禮未便, 合咨, 乞爲具奏給賜便益, 咨請施行, (後略)” (《歷代寶案》 第1集, 卷17, 國王咨文, 正統 원년 9월 24일자, 禮部宛中山王咨文). 단, 朝服 문제에 대하여 禮部는 직접 수선해서 사용하라고 회답했다(同書 第1集, 卷4, 禮部咨文, 正統 2년 6월 6일자, 禮部宛中山王咨文).

28) 邊土名朝有, 1992.9 《《歷代寶案》의基礎的研究》 (校倉書房) <禮部咨文> 210.

29) 《琉球國由來記》 卷1 (伊波普猷他編, 1961.6 《琉球史料叢書》 第1 (井上書房) 수록), 王城之公事, 正月朝拜御規式·朝拜, 및 11월 冬至條. 《琉球國舊記》 (전개 《琉球史料叢書》 第3 수록) 卷3, 公事, 正月朝賀·南殿賀禮, 및 11월 冬至條. 근세 琉球의 紫禁城遙拜儀禮에 대해서는 豊見山和之, 전개서 《Ⅲ 第1章 祭天儀禮と宗廟祭祀からみた琉球の王權儀禮》 236~241 ; 伊從勉, 2005.4 《琉球祭祀空間の研究 - カミヒトの環境學》 (中央公論美術出版) <第3部 第11章 琉球王權の場所 - 首里城正殿唐破風の誕生とその改修について> 557~558 참조.

30) 久米村의 福建系 화교집단이 琉球의 王府儀禮에 관여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眞榮平房昭, <對外關係における華僑と國家 - 琉球の閩人三十六姓をめぐって> 荒野泰典他 編, 1992.11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Ⅲ 海上の道)》 (東京大學出版會) 259~260 참조. 또한 明의 禮部가 제2尙氏 王統 제7대 尙寧王(재위 1589~1620년) 앞으로 보냈던 咨文에 “(前略) 竊惟, 卑國僻處海邦, 自入貢·受封之後, 一切輔導·禮義, 悉賴原賜三十六姓之裔, (後略)”라는 구절이 보인다(《歷代寶案》 第1集, 卷4, 禮部咨文, 萬曆 35년 12월 13일자, 琉球國王宛禮部咨文).

각색한 뒤에 올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명과 일본의 관계

한편 일본에서는 1402년(建文 4)에 室町幕府 제3대 장군에서 물러난 足利義滿(재직 1368~94)이 京都 北山の 별장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建文帝의 책봉을 수락하였다. 이듬해 永樂帝의 등극이 알려지자 義滿은 遣明使에게 ‘日本國王臣源’ 명의로 시작되는 表文을 지참시켜서 명으로 보냈으며, 그 결과 1404년에 永樂帝는 義滿을 다시 ‘日本國王’으로 책봉하였고, ‘日本國王之印’이라고 새겨진 金印을 하사하였다.³¹⁾ 이미 전년에는 永樂帝가 조선 국왕을 책봉했으므로, 이 해 1404년에 琉球 국왕과 일본 국왕이 탄생함으로써 조선·琉球·일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중화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세계 시스템(실제로는 무역시스템)³²⁾ 속으로 편입된 것이 된다. 이때 일본에는 永樂勘合 100 통이 들어왔고, 이후 일본과 명 사이에는 이른바 ‘勘合貿易’이 시작된다. 勘合船(遣明船이라고도 한다)은 1547년까지 약 150년 동안 19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실제로는 朝貢船이다.³³⁾ 명나라가 일본국왕인 室町殿(室町幕府의 수장, 대개의 경우는 室町 장군)에게 인정했던 조공 빈도는 10년 1공이었는데,³⁴⁾ 勘合船=조공사절의 파견 빈도와 거의 부합

31) 田中健夫, 1975.4 《中世對外關係史》(東京大學出版會) <第一部 第二章 冊封關係の成立> 64~67 ; 同, 1996.10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吉川弘文館) <第二 足利將軍と日本國王號> 49~50 ; 鄭樸生, 1985.1 《明·日關係史の研究》(雄山閣) <第三章 明日交渉> 146~149 ; 佐久間重男, 전개서 <第一編 第二章 永樂帝の對外政策と日本> 109~113 및 <終論 明·清からみた東アジアの華夷秩序> 358~359

32) 坂野正高, 1973.10 《近代中國政治外交史－ヴェスコ・ダ・ガマから五四運動まで》(東京大學出版會) <第三章 朝貢關係－《叩頭》問題> 76~83 ; 浜下武志, 1997.5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第一部 I 東アジア國際體系> 22 ; 村井章介, 전개 《海から見た戰國日本》 23

33) 田中健夫, 전개 《中世對外關係史》 <第一部 第四章 明および朝鮮との通交貿易の展開> 153~154 ; 同, 1982.11 《對外關係と文化交流》(思文閣出版) <勘合符·勘合印·勘合貿易> 102. <勘合貿易>의 선구적인 연구로 同, 1961.9 《倭寇と勘合貿易》(至文堂)이 있다.

34) “(前略) 永樂初, 復來朝貢, 賜龜紐金印·誥命, 封爲日本國王, (中略) 給勘合百道, 始令十年一貢, 貢道由浙江寧波府, 每貢正·副使等毋過二百人, (後略)”(《萬曆大明會典》 卷105, 禮部63 朝貢1 東南夷上 日本國條). 다만 小葉田淳씨는 1511년(正德 4)에 간행된 《正德大明會典》(《弘治會典》)의 규정에 의문을 품고 10년 1공의 通交制限은 寶德年間(1449~52년) 이후에 실시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伊川健二씨는 이 통설에 반론을 제기하고, 明側の 재정사정과 遣明使節에 의한 소금 밀매, 北京會同館에서의 傷害事件을 배경으로 10년 1공의 制定時期를 1484년(成化 20)으로 단정하는데, “《明憲宗實錄》과 勅諭에서 이 점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설득력이

한다. 물론 1년 3공의 조선, 2년 1공의 琉球와 비교하면 그 대우의 격차는 부정할 수 없다.(<表 1>참조). 入貢할 때 정규의 朝貢使節인지 여부를 준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던 勘合도 事大의 禮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선과 琉球 두 나라는 면제받았다.³⁵⁾ 勘合은 1386년(洪武 16)에 暹羅(아유타야, 현재 타이의 일부)에게 지급한 것이 시작이며, 급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日本·占城·爪哇(자바섬 북부)·滿刺加(말라카)·眞臘(캄보디아)·錫蘭山(스리랑카) 등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중국에 來航했던 15개국이었다.³⁶⁾ 勘合 급부의 대상국이 된 暹羅·占城·爪哇의 조공 빈도가 모두 3년 1공이지만, 일본의 조공 빈도는 10년 1공이라는 점에서도 일본의 이질성을 용이하게 간과할 수 있다.

또한 田中健夫씨에 따르면, 1402년 京都 北山殿에서 행해졌던 책봉의례 때는 “高机를 母屋 앞에 세우고 그 위에 詔書を 두고, 義滿이 먼저 향을 사르고, 이어서 삼배, 그런 다음에 꿇어앉아서 이것을 삼가봤다”고 한다.³⁷⁾ 鄭樸生씨는 “義滿의 이런 태도는 중화 세계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된 속국 국왕의 태도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간주하지만,³⁸⁾ 室町殿과 명 황제의 종속관계를 시사하는 명절의 遙拜 의례를 거행한 것인지 지

떨어진다. 小葉田淳, 1941.11 《中世日支通交貿易史の研究》(刀江書院) <第六章 明の諸制度> 321~322 ; 伊川健二, 2007.12 《大航海時代の東アジア - 日歐通交の歴史的な前提》(吉川弘文館) <第一部 第二章 諸國王使をめぐる通交制限> 60~61

- 35) 鄭樸生, 전게서 <第二章 明の對外政策> 62 ; 佐久間重男, 전게서 <終論 明・清からみた東アジアの華夷秩序> 353 ; 閔德基, 1994.7 《前近代 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早稻田大學出版部). 증보판은 同, 2007.8 《前近代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景仁文化社, 서울) <第一部 第二章 朝鮮朝前期の《日本國王》觀 - 《敵禮》の面から> 84~85. 權善弘, 전게 <조선시대 사대관계와 책봉체제> 66. 다만 勘合의 現存例는 없으며, 그 使用制度·形狀에 관해서는 伍躍, 2001.1 <日明關係における《勘合》-とくにその形狀について> 《史林》 第84卷 第1号 ; 橋本雄, <日明勘合再考> 九州史學研究會 編, 2008.12 《境界からみた内と外(《九州史學》 創刊50周年記念論文集・下)》(岩田書院) 등, 통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 36) “洪武十六年, 始給暹羅國, 以後漸及諸國, (中略) 每改元, 則更造換給, 計有勘合國分, 暹羅·日本·占城·爪哇·滿刺加·眞臘·蘇祿國東王·蘇祿國西王·蘇祿國峒王·柯支·淳泥·錫蘭山·古里·蘇門答刺·古麻刺”(《萬曆大明會典》 卷108, 禮部66, 朝貢通例, 勘合號簿條). 松浦章, <萬曆四十五年暹羅國遣明使 - 明代朝貢形態の様相> 夫馬進 編, 1999.9 《增訂 使琉球錄解題及び研究》(榕樹書林) 183, 187
- 37) 田中健夫, 전게 《中世對外關係史》 <第一部 第二章 册封關係の成立> 65 ; 橋本雄, 前掲 <朝鮮國王使と室町幕府> 172~173. 醍醐寺座主滿濟(만사이)의 日記 《滿濟准后日記》(《續群書類從》 補遺1, 續群書類從完成會, 1978 年4月 수록) 永享 6年 5월 12일조에 “(前略) 高机於立母屋前, 其上被置唐書, 先御燒香, 次三拜, 以後跪テ唐書お御拜見候キ, (後略)”라고 되어 있다. 다만 극히 최근에는 橋本雄, 2008.5 <室町日本の對外觀 - 室町殿の《内なるアジア》を考ふる> 《歴史評論》 697호가 義滿의 受封儀禮는 과연 《明集禮》 등 명 쪽의 빈례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금은 알 수 없다. 게다가 足利義滿이 죽은 후 家督을 이은 4대 장군 義持(재직 1394~1423년)은 1411년에 대명외교 방침을 전환하여 책봉관계를 단절했고, 6대 장군 義教(재직 1429~41년)가 책봉관계의 부활을 위하여 1432년 宣德帝에게 表文을 보냈으며, 8대 장군 義政(재직 1449~73년) 시대 이후는 명 사신의 來日이 끊어지는 등 황제 대 室町殿의 외교관계가 그다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明 황제가 冊封使를 파견하여 誥命 수여 儀禮를 거행했던 形跡이 있는 것은 義滿·義持·義教 3명에 불과하다.³⁹⁾ 義滿 이하 室町殿이 국내에서 ‘日本國王’을 표방했던 形跡도 찾아볼 수 없으며, ‘日本國王’號는 幕府가 對明貿易을 독점하기 위하여 ‘通交名義’로서 기능하는데 그쳤던 것이다.⁴⁰⁾

대명무역의 이권을 둘러싼 細川·大內 두 집안의 쟁탈전은 조공무역선의 입관수속을 두고 다투었던 寧波의 난(1523년, 이른바 寧波爭貢事件)을 초래하였고,⁴¹⁾ 일명관계는 이후 ‘勘合貿易’을 독점하고 있던 大內씨의 멸망(1551)과 함께 단절된다. 16세기의 室町 정권하에서는 조공무역 시스템의 본래의 정치적 의미는 상실되고, 책봉체제와 조공무역이 별개의 것으로 전락해 간 것을 상징한다.⁴²⁾ 훗날 1581년에 ‘日本國王’은 對明通貢의 중재를 宣祖(재위 1567~1608년)에게 요청했지만, 宣祖는 “人臣에게 私交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⁴³⁾ 그러면 1585년에 公家社會의 최고 관직인 關白에 취임하여 ‘唐

38) 鄭樑生, 전개서 <第三章 第二節 明日國交の開始> 147

39) 田中健夫, 전개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 <第二 足利將軍と日本國王号> 51~59에 따르면, 1433년 6월에 명은 義教에 대한 책봉사를 파견했지만, 義政 이후의 일본국왕에 대하여 책봉사가 파견된 흔적은 없다. 또 義政 이후에는 일본 국내의 내란을 계기로 朝鮮使館의 來日도 끊어졌다. 이 점은 中村榮孝, 1965.9 《日鮮關係史の研究(上)》(吉川弘文館) <五 室町時代の日鮮關係> 155

40) 田中健夫, 전개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 <第二 足利將軍と日本國王号> 44 ; 村井章介, <易姓革命の思想と天皇制> 永原慶二 編, 1995.11 《講座 前近代の天皇(第5卷 世界史のなかの天皇)》(青木書店) 34

41) 寧波爭貢事件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이라는 조공국의 入貢 현장에 초점을 맞춘 山崎岳, 2007.3 <朝貢と海禁の論理と現實－明代中期の《奸細》宋素卿を題材として> 夫馬進 編, 207.3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가 있다.

42) 尹誠翊, 2007.10 《명대 왜구의 연구》(景仁文化社, 서울) <제3장 嘉靖時期 倭寇 활동의 증폭 요인과 활동의 양상> 129

43) 松浦允任 撰(田中健夫·田代和生 校訂), 1978.7 《朝鮮通交大紀》(名著出版) 卷3, 萬松院公 昭景(宗義智), 朝鮮國王李昞奉復日本國王殿下(萬曆 9년 5월 일자), 116~119. 中村榮孝, 전개서 <一八 <右武衛殿>의朝鮮遣使> 749~750 ; 閔德基, 1995.3 <室町幕府의 對明朝貢 仲裁요청과 朝鮮의 대응> 《日本歷史研究》 창간호, 55. 다만 田中健夫, 전개 《前近代の國際交流と外交文書》 <第二 足利將軍と日本國王号> 80에서는 이 <日本國王>을 최후의 室町將軍 足利義昭(재직 1568~73년)가 아니라 對馬에서 창작한 가공의 국왕으로 본다.

입국(=明 정복)을 선언했던 豊臣秀吉⁴⁴⁾은 명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포섭되고, 그리고 황제를 요배하는 의례를 올렸던 것일까? 그 전제로서 秀吉은 당시의 명 황제인 神宗 萬曆帝(재위 1572~1620년)의 책봉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이 豊臣 정권에 의한 외교 구상의 성격을 검토했던 藤木久志씨는 “豊臣 정권의 대명외교의 기축은 어쨌든 勘合=교역 재개책에 있다”고 보고, “豊臣의 天下一統을 군사정복으로 간주하는 통설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⁵⁾ 豊臣政權은 1589년 정월 시점에서 島津씨를 매개로 명과의 ‘勘合’ 부활을 구상했고, 또한 1593년 5월에 명과의 강화교섭 과정에서 ‘勘合’의 부활 요구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게다가 秀吉의 ‘勘合’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⁴⁶⁾ 이미 中村榮孝·北島万次 두 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래의 ‘勘合’이 조공·책봉관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豊臣 정권과 명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⁴⁷⁾ 특히 幕藩體制 성립기에 있어서 琉球支配의 구도를 논한 紙屋敦之씨는

豊臣政權의 1593년(文祿 2) 5월의 日明講和交渉에서 ‘勘合’, 그리고 江戸幕府의 1610년(慶長 15)의 對明 講和交渉에서 ‘かんごう(감합)’은 모두 조공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公貿易을 바라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 日明 간의 인식의 차이를 명쾌하게 지적했다.⁴⁸⁾ ‘勘合’에 대한 오해는 豊臣政權뿐만

44) 岩澤愿彦, 1962.1 <秀吉의 唐入りに関する文書> 《日本歴史》 第163号. 뒷날 三鬼清一郎 編, 1984.5 《豊臣政權の研究(戰國大名論集18)》(吉川弘文館) 再録; 中村榮孝, 1969.8 《日鮮關係史の研究(中)》(吉川弘文館) <三 對外戰爭における豊臣秀吉の目的> 241~242

45) 藤木久志, 1985.5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東京大學出版會) <第四章 海の平和=海賊停止令> 243. 이른바 ‘勘合貿易振興說’과 ‘對外領土擴張說’은 진작부터 임진왜란의 동기를 둘러싼 논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三鬼清一郎, <關白外交體制の特質をめぐって> 田中健夫 編, 1987.4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吉川弘文館) 86; 同, <朝鮮役研究の一齣-中村榮孝氏の業績をめぐって> 同編, 2000.6 《織豊政權期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 357~360에 그러한 지적이 있다.

46) 藤木久志, 전개서 <第四章 海の平和=海賊停止令> 229~230, 239~244. 그리고 村井章介, <《東アジア》と近世>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 編, 2004.10 《日本史講座(第5卷 近世の形成)》(東京大學出版會) 51~52

47) 中村榮孝, 전개서 <二 豊臣秀吉の外征-文祿·慶長の役> 177~178; 北島万次, 1990.9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第三章第二節 日明講和の和議折衝> 188~190

48) 紙屋敦之, 1990.2 《幕藩制國家の琉球支配》(校倉書房) <第一部 第一章 琉球支配と幕藩体制> 22. 島津씨에 의한 琉球侵攻 직후인 1610년에 徳川政權은 日明貿易 부활의 중개역을 琉球에 기대했지만 실패했다(同, 25~28). 또한 同 <對明政策と琉球支配-異國から異國へ> 加藤榮一他 編, 1989.10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校倉書房) 265~268 참조.

이 아니었던 것이다. 中村質씨도 豊臣政權의 ‘勘合’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관리의 통교체제”이며, “현실에서는 朱印船 제도처럼 국가관리의 교역형태”로 생각하고, 徳川 정권기에 정비되는 朱印船 무역의 원류를 豊臣 정권기에서 찾았다.⁴⁹⁾ 원래 ‘감합무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공무역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극히 최근에는 명 정부 내부의 대일 강화교섭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한 中島樂章씨가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일본만이 조공무역을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병에 이르렀다는 회의추진과였던 小西行長·柳川調信·宗義智·景輒 玄蘇 일행의 말에 주목하였다.⁵⁰⁾ 1592년 5월의 漢城 함락 후, 秀吉은 後陽成天皇을 北京으로 옮기고 秀吉 자신은 日明貿易의 要港이었던 寧波로 居所를 정하여 동아시아 통교관계를 장악한다는 구체적인(또는 공상적인) 구상을 밝히고 있으며,⁵¹⁾ 임진왜란의 원인론⁵²⁾을 살피는데 있어서 흥미 깊은 지적이다.

과연 豊臣秀吉은 책봉 절차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책봉체제로 들어선 경우 명과 어떠한 의례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마도 秀吉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년 3공의 조공 빈도로 명과 조공·회사라는 무역 시스템에 편입된 조선과, 1547년의 제19차 勘合船을 마지막으로 10년 1공의 공기마저 포기했던 일본에서는

49) 中村質, <東アジアと鎖國日本－唐船貿易を中心に> 加藤榮一他 編, 전게서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수록, 341~342

50) 中島樂章, 2007.9 <封倭と通商－1594年の寧波開貢問題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제66권 제2호, 132. “平行長通書于金應瑞, 欲見更事之人, 與之議事, 應瑞使李弘發入往, 則平調信·平義智·仙蘇(=景輒玄蘇)·竹溪(=竹溪宗逸)等, 辟左右謂曰, 南蠻·琉球皆是外夷而奉貢, 稱臣於大明, 日本獨爲棄國, 未參其列, 前以此意請朝鮮, 欲達于大明而朝鮮不肯許, 不得已舉兵出來, (後略)” (<宣祖實錄> 권57, 27년 11월 1일 을해조).

51) 中村榮孝, 전게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76~77; 同, 전게서 <三 對外戰爭における豊臣秀吉の目的> 259~260, 283~284; 北島万次, 전게서 <第二章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東アジア> 95; 三鬼清一郎, 1992.11 <豊臣秀吉の對外政策> <韓國史論22(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64~67

52) 壬辰倭亂 연구의 학설사는 北島万次, 전게서 <第一章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に關する學說史的檢討>가 상세하다. 또한 임진왜란의 원인·목적·동기에 관한 연구사는 六反田豊他, 전게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編, 前掲報告書, 수록) 28~31 참조. 또한 朴哲暁, 전게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연구의 현황과 과제> 399에 따르면, “한국 측의 연구자는 원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 최근 朴秀哲, <15·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임진왜란’의 재검토> 歴史學會 編, 2006.6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一潮閣, 서울) 207~223에서는 壬辰倭亂의 원인론 외에 이른바 豊臣平和論의 문제점, “항복하면 살려주고, 반항하면 토벌한다”는 秀吉의 침공논리를 재검토하고, 壬辰倭亂 대신에 ‘壬辰戰爭’이라는 호칭을 제시하였다. 모두 참조하기 바란다.

정보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군사력을 배경으로 천하통일을 완수한 秀吉에게 있어서 萬曆帝의 신하로서 의례적 관계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 시스템 속으로 포섭된다는 발상은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동시에 그것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萬曆帝의 신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례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이하에서는 秀吉과 거의 동시대에 한반도를 다스리고 있던 선조(재위 1567~1608) 시대로 시기를 좁히고, 望闕禮라는 대명 외교의례의 ‘場’을 통하여 1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한중 관계의 실상에 다가가려 한다. 물론 임진왜란이라는 전시 하에 있던 王都 漢城이 주된 고찰의 무대가 된다. 그런 다음에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秀吉의 일본국왕 책봉에 관하여 약간의 고찰을 추가하려 한다.

II. 조선 宣祖代의 의례와 외교

1. 宣祖의 책봉의례

먼저 선조의 책봉의례의 ‘場’을 보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67년 7월 3일, 宣祖는 景福宮의 正殿인 勤政殿에서 즉위하였다.⁵³⁾ 당시 16세의 宣祖는 先代인 明宗(재위 1545~67년)의 직계가 아닌 德興 大院君(중종의 7남)의 3남으로 明宗妃 仁順王后 沈씨와 대신들의 합의에 따라 옥좌에 오른 傍系の 조선국왕이다.⁵⁴⁾ 그리고 이듬해인 선조 원년(1568) 2월 27일, 왕도 한성에는 책봉사 姚臣·李慶 일행이 영접을 받고 입국하였다. 正使로서 조선에 파견되었던 姚臣은 中官, 즉 宦官이다.⁵⁵⁾ 宣祖의 冊封 모습은 당일의 실록 기사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53) 《宣祖修正實錄》 권1, 즉위년 7월 3일 병진조.

54) 震檀學會 編, 李相伯 著, 1962.3 《韓國史(近世前期篇)》(乙酉文化社) <第二編 第五章 士禍·黨爭> 567~568 ; 李泰鎮, 1989.8 《朝鮮儒敎社會史論》(知識産業社, 서울). 일본어 역은 六反田 豊 譯, 2000.3 《朝鮮王朝社會と儒敎》(法政大學出版局) <II. 제11장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몇 가지 문제> 213

55) “賜故朝鮮國王李暉(=明宗)諡恭憲, 遣中官姚臣, 行人歐布稷吊祭, 封其侄署國事李暉(=宣祖)爲朝鮮國王”(《明穆宗實錄》 권14, 隆慶 원년 11월 5일 병진조).

申時, 冊封天使上使姚臣·副使李慶到迎詔門, 百官皆以兩具迎詔勅, 至勤政殿, 殿庭亦濕, 及申時, 頒詔勅也, 雨即止, 上捧詔勅, 退至中門外而還入, 夕, 上以宴詣太平館, (《宣祖實錄》 권2, 원년 2월 27일 정미조)

오후 4시 무렵 책봉사가 迎詔門에 도착하자 조선의 문무백관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공손히 詔勅을 맞이했고, 경복궁의 勤政殿으로 이동했다. 책봉사가 詔勅을 내릴 무렵에는 비도 그쳤으며, 선조가 詔勅을 받들고 中門에서 퇴장했으며, 저녁 무렵에는 太平館에서 책봉사를 접대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宣祖實錄》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훗날 鵝城府院君 李山海가 제출했던 ‘萬曆 36년 6월 12일’자 《宣宗大王穆陵誌》에 따르면 이때 선조는 穆宗 隆慶帝(재위 1566~72)로부터 ‘조선 국왕’에 책봉하는 誥命 외에 金印·冕服을 받았다.⁵⁶⁾ 이 해에 선조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체제에 정식으로 편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록 기사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勤政殿에서 冊封儀禮의 클라이맥스는 禮制上 조선 국왕이 종친·문무백관과 함께 ‘萬歲’를 삼창하는 장면이다.⁵⁷⁾ 만세삼창이라는 이른바 복속의례는 正朝·冬至의 대명 요배의례에 모두 공통적이다.⁵⁸⁾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豊臣秀吉에게도 이 의례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후술).

사료 속에 보이는 迎詔門(迎恩門이라고도 한다)은 中宗 32년(1537) 정월에 慕華館 앞에 신축하고 편액도 달았다.⁵⁹⁾ 慕華館이란 한성부 敦義門(서대문) 밖의 盤松坊에 있던 명나라 사신을 위한 영접시설이다.⁶⁰⁾ 향연이 베풀어진 太平館은 崇禮門 안에 있던 명 사신을 위한 숙박시설로서,⁶¹⁾ 모두 中華를 숭모하는 조선의 대명 외교자세를 가시화했던

56) “(前略), 翌年(=宣祖 元年)春, 皇帝遣太監姚臣·李慶, 齎詔封爲朝鮮國王, 欽賜誥命·冕服·彩幣, (後略)” (《宣祖實錄》 권221, 41년 2월조, 誌文).

57) “(前略)左通禮啓請山呼, 殿下拱手加額曰萬歲, 啓請山呼, 曰萬歲, 啓請再山呼, 曰萬萬歲,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同, (後略)”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詔書儀).

58) 桑野榮治, 전개 《高麗末期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對明外交儀禮の基礎的研究》 <附錄 朝鮮初期望闕行禮儀註試釋> 참조.

59) 《中宗實錄》 권83, 32년 정월 2일 임오조. 柳本藝 《漢京識略》 (순조 30년, 1830) 권1, 宮室, 慕華館條에 “(前略)館前, 舊有紅箭門, 中宗丙申(=中宗 31년), 改立雙柱門, 蓋綠琉璃瓦, 扁曰迎詔門, 己亥(=중종 34년), 華使薛廷寵以爲詔勅殊名, 改扁曰迎恩門, (後略)”이라고 되어 있다. 텍스트로는 2000.8 《漢京識略(第2版)》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을 이용했다.

60) “在敦義門外西北, 本慕華樓, 世宗十二年(=1430), 改爲館” (《新增東國輿地勝覽》 [중종 26년, 1531] 권3, 漢城府, 宮室條, 慕華館). “在盤松坊東, 有迎恩門, 爲華使迎送之所” (《大東地志》 [高宗 원년, 1864] 권1, 漢城府, 宮室條, 慕華館).

61) “在崇禮門內, 待中朝使臣, 館後有樓”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宮室條, 太平館). “在崇禮門內, 爲華使留館, (中略)仁祖朝, 撤之, 構弘濟院” (《大東地志》 권1, 漢城府, 宮室條, 太平館).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책봉사를 맞이한 조선에서는 그 후 2월 28일에 선조가 주재하는 翌日宴, 29일에 경복궁의 경회루 관람 후 勤政殿에서 열린 향연, 30일에는 정부 고관이 太平館에서 책봉사를 접대하고 있다.⁶²⁾ 이러한 일련의 의례는 대명외교상 정해진 규칙이다. 명 사신이 체제 중일 때의 접대의례에 대하여는 成宗 16년 정월에 시행된 《經國大典》에 “명 조정의 사신이 왕도 한성에 도착하면 下馬宴과 翌日宴을 베푼다 [왕세자·중친부·의정부·육조 또한 차례로 잔치를 베푼다]. 사신이 帝都 북경으로 돌아갈 때는 餞宴을 베푼다”고 되어 있으며,⁶³⁾ 명 사신이 한성에 도착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下馬宴 → 翌日宴 → 餞宴 순서로 조선 국왕이 주재하는 연회가 베풀어졌다.⁶⁴⁾ 이러한 외교 규칙으로 보자면 책봉사가 귀국할 때는 餞宴이 열려야 하는 셈이지만, 《宣祖實錄》에는 책봉사의 귀국에 관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宣祖實錄》을 편찬할 때 최초의 11년분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된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대조해 보면 책봉사는 3월 1일에 한강유람을 즐기고 있다.⁶⁵⁾ 당시 한성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에게 있어서 한강 유람은 이틀테면 정평이 나있는 코스였다.⁶⁶⁾ 그 후 3일에 太平館에서 餞別을 위한 上馬宴이 열렸고, 이튿날 3월 4일에 선조는 백관과 함께 慕華館 迎詔門에서 귀국길에 오른 책봉사를 전송했다.⁶⁷⁾ 이번의 선조에 대한 책봉을 감사하기 위해 右議政 丁應斗와 吏曹判書 姜暹이 謝恩使로 명에 파견된 것은 3월 하순의 일이다.⁶⁸⁾

62) “行翌日宴，上行酒於天使，五爵而畢後還宮”，“上於慶會樓，請宴兩天使，慶會樓觀光後，勤政殿赴宴”，〈宰樞宴于太平館〉(차례로 《宣祖實錄》 권2, 원년 2월 28일·29일·30일조).

63) “朝廷使臣，(中略)致京，設下馬宴·翌日宴[王世子·宗親府·議政府·六曹亦以次設宴]，及還，設餞宴 [凡接待，考儀軌行之，倭·野人同]”(《經國大典》 권3, 禮典, 待使客條). 《國朝五禮儀》 권5, 賓禮, 宴朝廷使臣儀條.

64) 후일 《通文館志》 권4, 事天下, 入京宴享儀條에 의하면, 명 사신 입경 후에 5회(下馬宴·翌日宴·仁政殿請宴·回禮宴·別宴), 귀국할 때 2회(上馬宴·餞宴), 합계 7회의 향연이 명나라 사신을 위하여 베풀어졌다. 또한 李鉉淙, 1961.11 <明使接待考> 《鄉土서울》 제12호, 141~145.

65) “天使二員遊觀漢江”(《眉巖日記草》 제1책, 무진 3월 1일). 텍스트는 朝鮮史編修會 編, 1936.3 《眉巖日記草(朝鮮史料叢刊 第8)》(朝鮮總督府, 京城, 저본은 文化柳氏家 소장본)을 이용했다.

66) 李相培, 2004 <조선전기 외국사신 접대와 明使의 遊觀 연구> 《國史館論叢》 제104집 ; 曹圭益 他 편, 2006.9 《연행록연구총서7(정치·경제·외교)》(學古房, 서울)에 다시 수록, 242~243에 의하면, 명나라 사신의 한양 遊觀地는 한강, 사찰, 도성 안의 개인집, 성균관, 모하루, 남산의 순서이다.

67) “以太平館上馬宴，朝，詣漢城府內依幕，(中略)巳時，百官隨駕至太平館近處，館員除經筵番外入依幕，盧君(=盧守愼)及余之出入，(後略)”，“罷漏後，以天使回程，百官先詣慕華館，(中略)巳時，上與天使酬酢，四爵禮畢，兩天使與上相別，步至迎詔門外，與百官相揖而別，(後略)”(차례로 《眉巖日記草》 제1책, 무진 3월 3일·4일).

68) “是日，謝恩使乃謝冊封，故丁應斗代爲右相之任，姜暹亦假吏判之銜”(《眉巖日記草》 제1책, 무진

이상으로 책봉사의 한성 체류는 1주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선조의 책봉의례는 상술한 접대의례를 포함하여 謝恩使를 파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2. 임진왜란 이전의 望闕禮

1) 명 사신의 來朝와 冬至의 望闕禮

선조 대에 望闕禮의 시행을 전하는 최초의 기록은 선조 5년(1572) 11월 동지에 보인다. 이 날의 기록도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⁶⁹⁾

冬至, 罷漏天明, 上率群臣, 行望闕禮, 仍班, 又行兩大妃殿賀禮, 禮畢, 群臣退, ○辰正, 上出坐殿上, 群臣入行賀禮, 禮畢, (《宣祖實錄》 권6, 5년 11월 7일 기축조)

동짓날 한성부 안의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는 큰 종이 올린다(罷漏. 5更 3點). 새벽녘(天明)에 선조는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望闕禮를 거행하였다. 조선 국왕이 문무백관과 함께 대명황제에게 동지를 축하하는 대명 요배의례이다. 이어서 양 대비전, 즉 仁聖王后(仁宗妃)와 仁順王后(明宗妃)에 대하여 동지를 축하한다. 이런 의례를 끝내면 신하들은 일단 대궐 정전에서 물러난다. 당일 오전 8시 무렵(辰正)이 되면 선조는 다시 正殿으로 행차하고, 신하들이 선조에게 朝賀禮를 올린다. 전자의 望闕禮는 명 황제를 축하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궁중의례이며, 후자의 朝賀禮는 조선 국왕을 축하 대상으로 하는 국내용 궁중의례이다.⁷⁰⁾ 望闕禮와 朝賀禮가 끝나면 통상은 대궐 正殿에서 會禮宴이 열리지

3월 21일). 朝鮮 官人이 外交使節로서 北京에 파견될 경우, 일반적으로 ‘假銜’으로서 임시로 1品階를 올리는 일이 관례였다. 金松姬 《朝鮮初期堂上官兼職制研究 - 東班京官職과 臨時職을 중심으로》 (漢陽大學校出版部, 서울, 1998년 12월) <第4章 1 對明使臣과 明使迎接官> 240.

69) 《眉巖日記草》 第7冊, 壬申 11월 7일조

70)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 [誕日賀附]條; 《國朝五禮序禮》 卷2, 嘉禮, 排班圖, 勤政殿正至誕日朝賀之圖. 正朝·冬至의 朝賀禮 事例에 대해서는 桑野榮治, 전게 《高麗末期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對明外交儀禮の基礎的研究》에서도 다루었지만, 한국에서는 韓亨周, 2002.2 <朝鮮初期 朝賀儀禮에 대한 考察 - 正至朝賀를 중심으로> 《明知史論》 第13輯 (서울) 외에 姜制勳, 2004.3 <조선 초기 朝會 의식> 《朝鮮時代史學報》 28 (서울); 同, 2005.9 <朝鮮世祖대의 朝會와 王權> 《史叢》 61 (서울); 同, 2007.5 <조선 성종대 朝會儀式과 朝會 운영> 《韓國史學報》 제27호 (서울); 同, 2007.6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韓國史研究》 137 (서울) 등 조선 초기로 시기를 좁혀서 朝會儀禮 전반의 구조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正朝·

만,⁷¹⁾ 선조 6년 이 해의 동짓날 실록 기사에는 會禮宴에 대한 기록이 없다. 正朝·冬至의 會禮宴은 중종대(1506~44년)에 가뭇과 이에 따른 흉년의 여파로 거행되지 않는 추세였다.⁷²⁾ 사료의 제약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마도 이 해의 동짓날에는 會禮宴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때 조선은 한성에서 명나라 詔諭使節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명 사신 翰林院編修(정7품) 韓世能·吏科左給事中(종7품) 陳三謨 일행은 萬曆帝의 등극을 通達하는 조칙을 가지고 11월 1일 한양에 도착했다. 그날 정오에 慕華館으로 행차한 선조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五拜三叩頭의 배례로써 명 사신을 환영했다.⁷³⁾ 저녁 무렵이 되자 선조는 역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太平館으로 가서 명 사신을 위문해야 하는 下馬宴을 개최하고 있다.⁷⁴⁾ 이미 책봉사 영접의례의 ‘場’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의례는 대명외교상 정해진 규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규칙에 준거하여 다음 날은 이른 아침부터 太平館에서 翌日宴이 열렸다. 그때 선조는 명 사신이 동짓날인 7일에 望闕禮를 거행하고 나서 귀국한다는 사실을 안다.⁷⁵⁾ 이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선조가 동짓날 望闕禮를 명 사신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거행해야 하는지 어떤지 문제가 되었으나, 柳希春은 명 사신과 동석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부정했다.⁷⁶⁾

아울러서 선조는 명 사신에게 체재 일정을 연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음의 실록 기사가 그것이다.

天使詣景福宮，周覽慶會樓，赴勤政殿之宴，上以宗系改正·惡名申雪奏請使將遣事，令通事告于兩使，答曰，天子聖明，今若奏請，可得請矣，上又請曰，初七日發行云，冬至節日行望闕禮而後發行日，晚矣，一日之間，請留，天使曰，懇至，當依許留，(後略)(《宣祖實錄》 권6, 5년 11월 4일 병술조)

冬至의 朝賀禮가 朝會儀禮의 中軸을 이루는 ‘大朝會’이며, 그 전제로서 望闕禮가 실시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71) 《國朝五禮儀》 卷3, 嘉禮, 正至會儀條 ; 《國朝五禮序禮》 卷2, 嘉禮, 排班圖, 勤政殿正至會百官之圖
- 72) 桑野榮治, 전개 <朝鮮中宗代における對明遙拜儀禮> 118
- 73) “上以卯時爲迎詔，而至于午時，天使韓世能·陳三謨奉詔勅，而至慕華館，上率百官，行迎拜禮，卽五拜三叩頭也，百官從下先行，(後略)”(《宣祖實錄》 권6, 5년 11월 1일 계미조)
- 74) 《宣祖實錄》 권6, 5년 11월 1일 계미조
- 75) “早朝，上乃出，率百官，詣太平館，設翌日宴，行九爵，上再行酒而止，日暮雪止，還宮，(中略)天使以初七日冬至，行望闕禮後，發行云，天使明日將謁聖”(《宣祖實錄》 권6, 5년 11월 2일 갑신조).
- 76) “天使到成均館，(中略)又衆議冬至望闕禮，或疑上與天使同行一處，希春以爲，不當同處爲之云”(《宣祖實錄》 권6, 5년 11월 3일 을유조).

이날 명 사신은 경복궁 경회루를 관람하고 근정전 연회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선조는 먼저 “宗系를 개정하여 惡名을 申雪하는 奏請使”, 즉 宗系辨誣奏請使 파견을 타진했는데, 명 사신은 “지금의 萬曆帝는 총명하여, 만일 명에 주청사를 파견하면 허가할 것이다”라고 회답했다. 중종 13년에 재연된 한중 간의 일대 외교분쟁인 宗系辨誣 문제⁷⁷⁾는 선조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으므로, 조선 정부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 교섭을 직접 진행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선조는 한성 체제 예정기간을 연장하고 동짓날 望闕禮를 마친 다음날 귀국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명 사신도 이를 받아들였다.⁷⁸⁾ 선조가 명 사신을 붙잡았던 것은 그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宗系辨誣을 둘러싼 외교 교섭에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사 韓世能은 동지 다음날 8일에 열린 太平館에서의 上馬宴, 9일의 慕華館 餞宴이라는 공식행사를 마치고 선조와 종실, 그리고 문무백관이 전송하는 가운데 귀국길에 올랐다.⁷⁹⁾ 宗系辨誣 문제는 후일 선조 22년에 해결을 보지만, 그때 宣祖가 “中朝의 明은 우리 조선을 內服(=帝居의 域)과 마찬가지로 본다”고 말할 만큼⁸⁰⁾ 조선 전기의 한중관계는 긴밀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명의 이처럼 긴밀한 관계 때문에 명은 壬辰倭亂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⁸¹⁾

77) 《大明會典》 朝貢條에 李仁任과 太祖 李成桂 父子가 4명의 高麗國王을 살해하고 政權을 奪取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中宗 13년에 발각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그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使節을 여러 차례 명에 파견했다. 末松保和, 전게서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의 <第十二章 宗系弁誣の發端>; 桑野榮治, 1998.3 <朝鮮版 《正徳大明會典》の成立とその現存－朝鮮前期對明外交交渉との關連から> 《朝鮮文化研究(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研究室紀要)》 제5호; 朴成柱, 2003.12 <조선전기 朝·明 관계에서의 宗系문제> 《慶州史學》 第22輯(慶州); 桑野榮治, 2008.3 <朝鮮中宗代における宗系弁誣問題の再燃>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編)》 제25호; 同, 2008.12 <朝鮮中宗20年代の對明外交交渉－《嘉靖會典》編纂の情報収集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第67卷 제3호; 同, 2009.3 <朝鮮中宗30年代における對明外交交渉－宗系弁誣問題をめぐって>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제26호

78) 다만, 明使가 동지의 望闕禮를 실시했던 장소는 불명이다. 동지 전날의 실록 기사에는 “政院啓曰, 明日, 天使望闕禮處, 時未定, 何以爲之, 取稟, 傳曰, 大臣·禮官命招議啓”(《宣祖實錄》 권6, 5년 11월 6일 무자조라고 하는데, 대신과 禮官의 협의 결과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다.

79) 《宣祖實錄》 권6, 5년 11월 8일·9일조.

80) “傳曰, 我國宗系昭雪, 大明會典一冊, 則徑請頒給, 是我國莫大之慶, 而卷帙未成, 終有所未給, 中朝視我國無異內服, 而獨於會典以其載中國諸機, 不爲頒給, 是外夷之也, 尤爲未穩, (後略)”(《宣祖實錄》 권23, 22년 2월 4일 신사조). 문제가 된 《萬曆大明會典》全帙은 이 해 11월에 萬曆帝가 宣祖에게 頒賜했다(同書 권23, 22년 11월 22일 병인조).

81) 예를 들면 케네스·스워프(Kenneth M. Swope)씨는 명과 조선의 관계를 이(明)를 보호하는 입술(朝鮮)에 비유하고, 冊封·朝貢体制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同, <순망치한(唇亡齒寒)－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鄭杜熙他編, 前掲書 《임진왜란》, 수록) 342

그 후 선조대의 望闕禮 실시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일련번호 1부터 16까지는 임진왜란 이전, 17부터 34까지는 임진왜란기, 35 이후는 난후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선조대에 특징적인 正朝·冬至 望闕禮의 실시 상황을 임진왜란의 국면에 주목하면서 추적하기로 한다.

2) 國忌에 수반하는 朝賀禮의 順延 조치

임진왜란 이전의 경우 《宣祖實錄》에 보이는 한 望闕禮 실시 상황은 순조롭지 않다. 기상광학적 日變이라든가 日食 등의 天譴思想,⁸²⁾ 극한·강우 등의 기후조건,⁸³⁾ 明宗妃인 仁順王后의 사망에 수반하여 正朝·동지의 궁중의례는 차츰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2> 4·5·7·11·15). 더군다나 선조 10년 11월에는 仁宗妃 仁聖王后가 경복궁에서 사망했으며,⁸⁴⁾ 그 후 3년 동안은 國喪 기간인 탓에 명절의 궁중의례가 정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임진왜란 이전의 왕조국가 공식기록은 대부분이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며, 그 결과 광해군(재위 1608~23년) 때 편찬된 《宣祖實錄》에는 모두 61개월분(약 5년간)에 이르는 기록이 빠져 있다.⁸⁵⁾ 때문에 望闕禮를 비롯하여 궁중의례에 관한 기록이 빠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선조 14년 正朝 望闕禮가 약식인 ‘權停禮’(權停例라고도 한다)로 거행되었다는 것이다. 다음날 정월 2일이 明宗妃인 仁順王后의 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날의 기록을 보자.

82) “政院, 以日變(=前日, ‘흰 무지개가 태양을 관통한다’는 이상 현상을 관측)請停元朝望闕禮及初九日 文昭殿大祭, 上從之”(《宣祖實錄》 권7, 6년 12월 29일 을해조), “日有食之”(同書 권23, 22년 정월 초하루 기유조). 日變은 중대한 凶象이며, 日食 또한 위정자가 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廢朝(輟朝)되었다. 渡邊敏夫, 1979.5 《日本·朝鮮·中國 日食月食寶典》(雄山閣出版) 280; 田村專之助, 1983.12 《李朝鮮氣象學史研究(東洋氣象學史論叢 I)》(三島科學史研究所) 114~115

83) “左右相詣闕啓曰, 日候極寒, 自上冒曉舉動, 有妨保攝未安, 明日望闕禮請命停, 本朝賀禮并爲權停, 上從之”(《宣祖實錄》 권8, 7년 11월 기해 [29일] 조), “以庭濕, 停望闕禮”(《宣祖實錄》 권18, 17년 정월 1일 기묘조).

84) 《宣祖實錄》 권11, 10년 11월 29일 신사조. 《璿源系譜紀略》(震檀學會 編, 1959.10 《韓國史(年表)》(乙酉文化社, 서울) 수록) 璿源世系, 仁宗妃.

85) 末松保和, 1971.9 <宣祖實錄解説> 《李朝實錄》 제30책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 申奭鎬 1982.9 <凡例> 《朝鮮王朝實錄》 제21책 (國史編纂委員會, 과천) 3~4

望闕禮權停, 以明日乃仁順王后忌辰, 今日行舞蹈盛禮未安, 或以爲退行爲當, 或以爲爲上國之禮, 不可退行, 命大臣及正二品以上會議于闕庭, 定爲是日行之, 本國賀禮則退行於初三日, 永爲恒式, (《宣祖實錄》 권15, 14년 정월 1일 병인조)

仁順王后는 6년 전인 선조 8년 정월 2일에 창경궁 通明殿에서 사망했다.⁸⁶⁾ 명절인 正朝라고는 해도 王母의 忌日에 앞서 가무음곡을 즐기며 성대한 축하행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正朝 望闕禮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 혹은 ‘上國(=중국 명)의 예’를 경솔하게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선조는 대신 및 정2품 이상의 고급관료에게 궁궐 뜰에서 의논하도록 하명했다. 그 결과 ‘上國의 禮’인 望闕禮는 지금까지 해 온 대로 正朝에서 거행하고, 본국 조선의 朝賀禮는 정월 3일로 연기하며, 이후 오래도록 恒式(恒例)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이 해 정월 3일의 실록 기사에는

以權停禮行正朝賀, (《宣祖實錄》 권15, 14년 정월 3일 무진조)

라고 되어 있으며, 正朝를 축하하는 朝賀禮는 仁順王后의 기일 다음날에 權停禮로 시행하고 있다. 그 후, 예를 들어서 <표 2> 11·14에서 표시한 대로 선조 17년 正朝와 21년 正朝의 朝賀禮는 정월 3일에 거행했으며,⁸⁷⁾ 선조 14년 正朝에서 결정했던 朝賀禮의 順延이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까지는 거의 정례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번잡한 의례를 반복했던 것은 조선국왕 뿐만은 아니다. 일찍이 黃仁宇씨는 “朝廷의 정치는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그 요점은 의례와 人事의 둘이다”라고 갈파했는데, “尊卑의 등급을 體現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례의 정치적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宣祖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萬曆帝는 각종 의례를 숙지한 군주로 평가받지만, 나중에 매일 여러 차례 실시되는 이른 아침의 조회도 廢朝로서 쉬는 날이 많아졌으며, 제사 의례의 측면에서도 직접 임석하는 일 없이 관료를 대리로 파견하는 등 의례의 간략화가 진행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⁸⁸⁾

86) 《宣祖實錄》 권9, 8년 정월 2일 임인조. 《璿源系譜紀略》 璿源世系, 明宗妃.

87) “以權停禮行賀禮, 以初二日仁順王后國忌, 故退行正朝賀禮也”(《宣祖實錄》 권18, 17년 정월 3일 신사조), <行正朝賀禮> (동서 권22, 21년 정월 3일 정해조).

88) 黃仁宇(稻畑耕一郎 他譯), 1989.8 《萬曆十五年—一五八七 <文明>의悲劇》(東方書店) < I 萬曆帝 > 6~16

3. 임진왜란기의 望闕禮

1) 한성 탈환의 皇恩에 감사하는 望闕禮

宣祖 25년(1592)4월 13일(日本曆 12일), 小西行長·宗義智 등의 軍勢가 釜山에 상륙하면서 壬辰倭亂이 발발했다. 조선왕조의 공식기록에는 일본군 침공의 기술로서

倭寇至, 先是, 日本賊酋平秀吉爲關白(割註略)并吞諸國, 殘暴日甚, 常以天朝不許朝貢爲憤, 嘗遣僧玄蘇等乞假途犯遼, 我國以大義拒之甚峻, 賊遂傾國出師, 以玄蘇·平行長·平清正·平義智等爲將, 大舉入寇, (後略)(《宣祖實錄》 권26, 25년 4월 13일 임인조)

라고 적었으며, 《宣祖實錄》에는 “豊臣秀吉이 關白이 되어 국내를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天朝 明이 조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였다”고 되어 있다. 작년 정월에 通信使 黃允吉·副使 金誠一·書狀官 許箴 일행의 귀국에 수반하여 日本回禮使로서 正使 柳川調信·副使 景輒 玄蘇가 來朝했는데, 당시의 對馬島主 宗義智 등에 의한 전쟁 회피 대책, 즉 對明通貢을 위한 ‘假途入明’(‘假道入明’이라고도 한다)교섭이 實錄 기사에도 반영되어 있다.⁸⁹⁾ 주지하다시피 나중에 明軍은 秀吉과 함께 博多 聖福寺 승려 景輒 玄蘇의 首級에 최고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秀吉을 ‘日本國王’에 책봉할 때는 景輒 玄蘇에게 ‘日本國 本光禪師’ 칭호를 特賜하게 된다.⁹⁰⁾ 좌우간 일본군 침공이 조선왕조에게는 空前絶後の ‘倭寇’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4월 29일에 忠淸道 忠州의 敗報에 접하자 宣祖는 庶出의 次子인 光海君을 王世子로 册立하고(뒷날 宣祖 25년 6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分朝), 조선정부에서는 宣祖의 ‘去邠論’(播遷論)과 諸臣의 漢城 ‘固守論’이 대립하는 와중에 遼東 ‘內附論’(逃亡論)者이기도 한 宣祖는 漢城 탈출을 결의하고 다음날 平壤으로 향했다.⁹¹⁾

임진왜란기에 있어서 望闕禮의 실시 상황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경우, <표 2>에 표시한대로 그 차이가 확연하다. 선조 25년 4월부터 전후 7년 동안 선조는 正朝·동지

89) 中村榮孝, 1974.10 <壬辰倭亂の發端と日本の《假道入明》交渉> 《朝鮮學報》 제70집, 97~103

90) 長正統, 1963.10 <景輒玄蘇について－外交僧の出自と法系> 《朝鮮學報》 제29집, 136~137

91)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29일·그믐조. 孫鍾聲, 1988.8 <壬辰倭亂時 分朝에 관한 小考>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刊行委員會, 서울) 294~296; 同, 1990.9 <壬辰倭亂時 對明外交－請兵外交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제14집(果川) 172~174; 北島万次, <壬辰倭亂期の朝鮮と日本> 荒野泰典他 編, 1992.7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Ⅱ 外交と戦争)》(東京大學出版會) 133~134; 同, 1995.9 《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 42~44

그리고 聖節의 望闕禮를 거의 매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다(<표 2> 17~34). 이 중에서 명절이 아닌 날에 望闕禮를 시행한 사례가 보인다. 다음의 실록 기사를 보자.

寅時, 上幸淸溪館, 率百官·耆老·軍民, 御吉服行望闕禮, 以謝皇恩, 禮畢, 反素服還宮, ○以克復京城告于宗廟·社稷(《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2일 을묘조)

선조 26년 5월 2일 오전 4시 무렵에 선조는 淸溪館으로 행차하여 문무백관·기로·군민을 거느리고 望闕禮를 거행하였다(<表 2> 19). 선조 26년 3월부터 선조는 평안도 肅川府에서 남하하여 永柔縣(별호는 淸溪)을 行宮으로 삼았으며,⁹²⁾ 의례의 무대가 된 淸溪館은 永柔縣 읍내에 있던 객사이다.⁹³⁾ 望闕禮를 실시한 이유는 ‘皇恩’, 즉 대명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 은혜란 ‘경성 수복’, 즉 왕도 한성의 탈환을 의미한다. 이해 4월 중순에 明의 遊擊將軍 沈惟敬과 小西行長 사이에서 日明 화의교섭이 성립하자 일본군은 한성에서 철수했다.⁹⁴⁾ 일본 측의 생각으로는 명과 조선이 항복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한성에서 철군했던 것이지만,⁹⁵⁾ 조선 국왕의 입장에서는 황제가 파견한 명군 덕분에 한성이 탈환된 것이었다. 화의교섭을 의문시하는 明 정부에서는 ‘社稷(국가)를 상실한’ 宣祖의 책임을 추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國命을 맡길만한’ 光海君에게 讓位를 권고하는 王位交替論까지 나온 것도 사실이다.⁹⁶⁾ ‘경성 수복’에 대한 시선은 일본·조

92) 《宣祖實錄》 권36, 26년 3월 13일 무진조. 임진왜란의 개전으로 한성을 포기했던 선조가 이듬해인 선조 26년에 평안도 의주에서 한성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족적은 中村榮孝, 전게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190 ; 李燭錫, 1977.3 《壬辰戰亂史－文祿・慶長の役(中卷)》(東洋圖書出版) <第二篇 第八章 第一節 概況> 166~167 참조.

93) 《朝鮮後期地方地圖》 평안도편 상(서울대학교규장각, 2002년 12월) <25.永柔縣地圖> 참조.

94) 中村榮孝, 전게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174~175 ; 石原道博, 1963.7 《文祿・慶長の役》(塙書房) 79·182~185 ; 李燭錫, 전게서 <第二篇 第八章 第一節 概況> 153~154 ; 北島万次, 전게 <壬辰倭亂期の朝鮮と日本> 151 ; 金文子, 1993.10 <豊臣政權期の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史學》 第37号, 35~36

95) 中村榮孝, 전게서 <三 對外戰爭における豊臣秀吉の目的> 279~271 ; 中野等, 2006.12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吉川弘文館) <Ⅲ 戦局の轉換> 184~186

96) 小野和子, 1996.2 《明季党社考－東林党と復社》(同朋舎出版) <第二章 第二節 明日和平交渉をめぐる政争> 122~123 ; 韓明基, 1999.8 《임진왜란과 한중관계》(歷史批評社) <제1부 제1장 명군 참전과 정치적 영향> 60~61 ; 同, <임진왜란 시기 決戰 여부를 둘러싼 朝明 갈등> 鄭玉子他, 2007.12 《조선시대 문화사(하)－시대정신과 인간의 대응》(一志社, 서울) 67. 明 정부 내부의 강화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은 岡野昌子, 1977.12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 明清史論叢》(燎原書店) 148~154 외에 三木聰, 2003.2 <万曆封倭考(一)－万曆二十二年五月の<封貢> 中止をめぐる>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제109호 ; 同, 2004.7 <万曆

선·明的 동아시아 3국에 있어서 각기 입장을 달리한다.

한성 탈환의 皇恩에 감사하는 望闕禮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宣祖이며, 4월 하순에 선조는 승정원을 통하여 예조에 그 조치를 하명하였다.⁹⁷⁾ 이 해 정월에 李如松 제독이 이끄는 명나라 지원군에 의하여 평양 탈환이 성공했지만,⁹⁸⁾ 그때 謝恩使 파견이 늦어진 탓에 兵部尙書 石星에게 비난을 들었던 일이 있다. 그 때문에 선조는 이번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禮曹는 우선 5월 1일에 백관을 거느리고 초하루의 哭禮를 거행했으며, 다음날에 望闕禮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답하였다.⁹⁹⁾ 확실히 조선 국왕은 즉시 望闕禮를 거행하여 명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禮曹는 ‘宣靖陵의 변’, 즉 宣陵(성종과 그 繼妃 貞顯王后의 능)과 靖陵(中宗의 능)이 일본군에게 침탈당한 사건¹⁰⁰⁾에 대한 哭禮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형법으로 도입된 《大明律》 刑律에 따르면, “무릇 모반이란 도모하여 社稷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역은 도모하여 宗廟·山陵 및 궁궐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 왕릉의 도굴 파괴는 쿠데타에 필적하는 大罪로서 陵遲(8토막으로 자름, 또는 車裂)한 뒤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다.¹⁰¹⁾ 게다가 禮曹는 望闕禮를 거행할 때 원래의 의식에서 춤과 노래를 삭제할 것을 선조에게 요청하였다.¹⁰²⁾ ‘宣靖陵의 변’이라

封倭考(二)－万曆二十四年五月の九卿・科道會議をめぐって> 《同》 제113호에 상세하다.

- 97) “上敎政院曰, 京城收復, 即時似當率群臣, 行望闕禮謝皇恩, 而該曹似無處置議處, 且平壤收復, 不即謝恩, 天將累以爲言, 至於石尙書(=石星)亦以爲非云, 今者謝恩使似當趁發, 並言于禮曹”(《宣祖實錄》 권37, 26년 4월 28일 임자조).
- 98) 1개월 뒤인 宣祖 26년 2월에 비변사는 李如松을 위하여 顯彰碑를 세우고 生祠에 제사를 지낼 것을 건의했고, 나중에 平壤에서는 李如松과 石星을 함께 제사지내는 武烈祠가 완성된다. 中村榮孝, 1972.3 <朝鮮の慕明思想と大報壇> 《天理大學學報》 제78집, 197; 桑野榮治, 2006.3 <朝鮮後期における國家祭祀儀禮の變動－壬辰倭亂直後の朝鮮と明>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제23호, 35~36
- 99) “禮曹啓曰, 望闕禮所當即時舉行, 而自上方遭罔極之變, 成服之前, 行禮未安, 初一日, 自上率百官, 行朔日哭禮, 自初二日行之”(《宣祖實錄》 권37, 26년 4월 28일 임자조).
- 100) 李燾錫, 전게서 <第三篇 第十一章 第二節 交渉の停頓> 418~419. 壬辰倭亂 뒤의 日朝 국교회복 때 이 王陵盜掘 사건의 범인 인도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中村榮孝, 1969.12 《日鮮關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三 江戸時代の日鮮關係> 264~266; 三宅英利, 1986.3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文獻出版) <第二篇 第一章 幕藩体制確立期の通信使> 158~161 외 에 孫承詰, 전게서 <제3장 임란 직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 120-122; 李啓煥, 1997.1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臨川書店) <第五章 『和好』・『通好』關係の成立> 242~247 참조.
- 101) 《大明律》 卷18, 刑律, 盜賊, 謀反大逆條. 물론 이 규정의 연원은 唐律까지 소급한다. 花村美樹 <高麗律> 京城帝國大學法學會 編, 1937.5 《朝鮮社會法制史研究論集 第9冊》(岩波書店) 57. 朝鮮의 陵遲刑에 관해서는 당장은 앤더스·칼슨(Anders Karlsson), <千金の子は市に死せず－17・18世紀朝鮮時代における死刑と梟首> 富谷至 編, 2008.2 《東アジアの死刑》(京都大學出版會) 109~115 참조.

는 국난을 당하여 화려한 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望闕禮는 ‘上國’을 위한 의례이므로 춤과 노래는 당연한 것이며, 다만 사죄를 드릴 때에는 五拜三叩頭의 예로써 대처한다고 선조는 결정을 내렸다. 춤과 노래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황제의 은혜에 대한 더없는 환희를 나타냄과 동시에, 황제에 대한 신하로서의 복종을 표현하는 身體儀禮였다.¹⁰³⁾

선조는 5월 1일에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궁궐의 뜰에 모여서 통곡했다.¹⁰⁴⁾ 4월 하순에 ‘宣陵의 변’을 안 이래 선조는 禮曹의 진언에 따라 이처럼 四拜가 아닌 會哭 의례를 이미 세 번이나 지내고 있었다.¹⁰⁵⁾ 그런데 그날 중에 禮曹는 ‘宣陵의 변’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라는 종실 順寧君 李景儉의 장계를 이유로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望闕禮를 중지하자고 선조에게 청원했다.¹⁰⁶⁾ 이에 대하여 선조는 望闕禮를 올려 사은하는 것은 ‘皇上을 위한 일’이라며 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선조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주의 은혜를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상중이라도 사은해야 할 일이 있으면 궁궐 밖에서 상복을 벗고 의례를 지낸다고 한다. 그리하여 禮曹가 대신들과 다시 협의한 결과 선조의 의향을 존중하여 다음날 5월 2일의 望闕禮를 예정대로 거행하지는 의견에 찬성했다. 이때 선조는 望闕禮의 구체적인 거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이란 지금 한성에 있는 노인·어린이와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문무백관 행렬의 끝에 서고, 백관과 마찬가지로 拜禮와 叩頭禮를 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일반 백성들도 황제의 은혜를 알고 크게 감격할 것이라고 선조는 생각하였다. 선조의 의중을 안 禮曹는 ‘曠世의 盛典’, 요컨대 세상에 둘도 없는 성대한 儀禮라고 칭송했고, 대신들 또한 이에

102) “禮曹啓曰, 初二日望闕禮儀註, 減去舞蹈一節, 上教曰, 爲上國陳賀, 則似當有舞蹈之節, 只於陳謝, 則似當行五拜三叩頭之禮”(《宣祖實錄》 권37, 26년 4월 29일 계축조).

103) 渡邊信一郎, 1996.9 《天空の玉座 - 中國古代帝國の朝政と儀禮》(柏書房), 한국어판은 문정희·임대회 역, 2002.11 《天空의 玉座 - 中國 古代帝國의 朝政과 儀禮》(新書苑, 서울) 170~174.

104) “上率百官, 會哭于闕庭之內”(《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1일 갑인조)

105) “禮曹啓曰, 宣靖陵之變, 前日則變服舉哀, 行四拜禮矣, 群議拜禮未穩云, 自上率百官哭盡哀, 連三日朝哭, 內殿亦當如是, 上從之”(《宣祖實錄》 권37, 26년 4월 24일 무진조). 세 번의 會哭儀禮는 同書 권37, 26년 4월 25일·26일·29일조.

106) “禮曹啓曰, 卽見順寧君景儉狀啓, 宣陵之變尤極慘痛, 今日自上率百官哭臨, 明日望闕禮亦姑停, (中略)上曰, 哭臨事, 更與大臣商確以啓, 謝恩一節, 則爲皇上事, 聞中朝之人, 則初喪如有謝恩之事, 脫衰於闕門外, 成禮而出云, 蓋以君恩爲重也, 謝恩漸晚, 予意雖哭臨, 明日謝恩似不可退, 禮曹啓曰, 更議于大臣, 則當初聞變, 已行三日哭禮, 今又哭臨似爲未穩云, 來初二日謝恩事, 請依上教行之, 教政院曰, 明日謝恩時, 此處老少及凡來此之人, 於百官班列後行退立, 使之同行拜禮叩頭, 則是率臣民謝皇恩, 而臣民亦知皇恩感激之至, 此意預爲曉諭行禮, 禮曹回啓曰, 致謝皇恩, 一如上教, 實是曠世盛典, 大臣之意亦如此, 上從之”(《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1일 갑인조).

동의하였다. 원래 望闕禮의 儀註에는 일반 백성의 참석 규정이 없으므로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비변사 역시 ‘경성 수복’을 ‘나라의 큰 경사’로 간주하고, 모든 신하가 이를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조의 의향에 동조하였다.¹⁰⁷⁾ 선조는 한성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축하는 불가하다며 다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 행정관청인 비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성 수복’은 만백성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宗廟와 社稷(왕실과 국가)의 경사였다. 조선 각지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일본군인 수중에 들어 있었으므로, 이미 일본군으로부터 한성을 탈환한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변사는 각지에 사자를 보내 황제의 은혜가 조선에 미치고, 또한 宗廟·社稷이 회복된 일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왕이 내일 望闕禮를 거행하여 황은에 감사하는 뜻을 밝힌 뒤에 우리 신하들은 여러 관리와 군민을 이끌고 궐문 밖에서 황은에 감사드리겠다고 하였다. 선조가 비변사의 이런 제안을 허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선조는 5월 2일 이른 아침에 백관·기로·군민을 거느리고 望闕禮를 올렸으며, 그 후 종묘·사직에 한성 탈환을 고했다.¹⁰⁸⁾ 望闕禮가 끝나면 대개는 같은 正殿에서 朝賀禮가 개최된다. 그러나 왕조국가에서 ‘宣陵의 변’은 역시 견디기 어려운 참사였으므로 사헌부와 사간원 兩司는 朝賀禮의 중지를 요청했고, 선조도 이를 받아들였다.¹⁰⁹⁾ 나중에 李山海가 쓴 《宣宗大王穆陵誌》도

(前略) 萬曆二十一年癸巳春, 提督協率軍兵, 大破平壤之賊, (中略) 夏, 聞官軍收復京都, 群臣請賀, 王曰, 可慰, 不可賀也, 但當率臣民行望闕禮, 以謝皇恩而已, (後略)(《宣祖實錄》 권221, 41년 2월조, 誌文)

107) “備邊司啓曰, 收復京城, 一國大慶, 群臣當爲陳賀, 自上以爲可慰, 而不可賀也, 京城恢復, 非徒億萬蒼生之幸, 其於宗社之慶, 爲如何哉, 而闕然不爲喜慶之舉乎, 且四方之人久陷賊藪, 必不知今日克復之事, 理宜遣使通諭, 使明知皇恩所及, 宗社重恢之意, 明日自上致謝皇恩之後, 臣等率群僚·軍民詣闕門外, 以謝聖恩, 上從之”(《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1일 갑인조).

108) 선조는 평안도 永柔를 行宮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묘·사직’은 한성 안의 宗社가 아니라 永柔 읍내의 임시시설을 이용했을 것이다. 종묘·사직의 신위(위패)는 선조가 한성을 포기했던 선조 25년 4월 말에 가지고 나왔으며, 이 해 26년 8월 한성으로 들어오게 된다(《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그믐조. 《宣祖實錄》 권41, 26년 8월 20일 신축조). 그동안 廟社의 신위는 선조 26년 3월 상순에 定州에서 永柔로 옮겼고, 江華에서 옮긴 세종의 睿容(초상)과 함께 봉안되었다(《宣祖實錄》 권36, 26년 3월 2일·16일조).

109) “兩司啓曰, 京城賊退, 皇恩罔極, 自上致謝之禮, 雖不可得已, 宣陵之變慘不忍言, 本朝賀禮在情禮未安, 雖今日所當并舉, 請命停行, 上從之”(《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을묘 [2일] 조).

라고 한성 탈환의 황은에 감사하도록 선조가 거행했던 萬曆 21년(宣祖 26) 여름 5월의 望闕禮에 주목하고 있다.

2) 한성 환도 후 南別宮에서의 望闕禮

宣祖 26년 10월 1일 저녁 무렵, 한성으로 돌아온 宣祖는 貞陵洞에 있던 月山大君(成宗의 형)의 舊宅(현재 德壽宮)을 行宮으로 삼았다.¹¹⁰⁾ 宣祖는 즉시 慕華館으로 나가서 皇恩에 감사하고, 폐허가 된 宗廟 앞에서는 百官을 이끌고 통곡하였다.¹¹¹⁾ 약 2개월 뒤의 實錄 기사에는 “上께서 동지 望闕禮를 南別宮에서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宣祖는 南別宮(현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冬至 望闕禮를 거행했다(<표 2> 20).¹¹²⁾ 南別宮이란 漢城府 南部 會賢坊에 있던 조선왕조 시대의 별궁 중 하나이며,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총대장 宇喜多秀家 및 明軍 총지휘관 李如松이 차례로 이곳에 주둔했다.¹¹³⁾ 이어서 이듬해 선조 27년에는 임진왜란이 한창인 중에도 명절 望闕禮가 선조의 주재로 충실하게 거행되고 있다. 이하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上在貞陵洞行宮, 王世子在公州, ○上詣南別宮, 行望闕禮, (《宣祖實錄》 권47, 27년 정월 1일 경진조)

卯時, 上行望闕禮, (同書 권54, 27년 8월 17일 임술조)

行冬至望闕禮于時御所, ○議政府進獻誕日禮物, 視平時草草, ○王世子問安, (同書 권57, 27년 11월 11일 을유조)

110) 中村榮孝, 前掲書 <二 豊臣秀吉の外征> 190. 宣祖의 한성 환도 후 약 1개월 동안의 활동상황은 李鉉淙, 1963.10 <壬辰倭亂과 서울> 《郷土서울》 제18호 (서울) 67~68 참조.

111) “上至慕華館, 謝皇恩行四拜禮, 至宗廟前, 易服, 率百官哭臨”(《宣祖實錄》 권43, 26년 10월 1일 신사조). 宗廟와 社稷의 神位는 沈義謙(明宗妃의 祖父 沈連源의 손자) 덕에 봉안되었고, 宗廟는 뒷날 光海君 즉위년(1608)에 재건되었다. 李賢珍, 2008.12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一志社, 서울) <一 조선전기 종묘 營建論과 운영상의 특징> 53~55

112) 《宣祖實錄》 권44, 26년 11월 29일 기묘조.

113) “京城復, 天兵入城, 李提督館於小公主宅〔後稱南別宮〕, (中略)小公主宅亦倭將秀嘉所止, 故見遺, (後略)”(《懲毖錄》〔《西厓文集 附懲毖錄》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서울, 1958년 9월, 수록] 卷2, 癸巳 4월 20일조). “在會賢坊, 本小公主第, 宣祖壬辰, 倭將平秀家住此, 後李如松·楊鏞亦住于是, 仁祖朝, 太平館撤後, 以是宮爲華使留館”(《大東地志》 권1, 漢城府, 宮室條, 南別宮). 이후 조선의 역대 국왕은 남별궁에서 명·청의 사신을 접견하게 된다. 한성의 일본군 주둔지에 관해서는 李鉉淙, 전계 <壬辰倭亂과 서울> 43~44 참조.

모두 간략한 형태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 3건의 사례는 차례로 正朝·聖節, 그리고 동지 望闕禮의 실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표 2> 21·22·23). 선조는 이 해의 正朝를 정릉동의 행궁에서 맞이하고, 작년의 동지와 마찬가지로 南別宮에서 望闕禮를 거행하였다. 이어서 8월 17일의 거행 기록에는 “卯時(=오전 6시경)에 上께서 望闕禮를 행하다”라는 기사뿐이지만, 그날은 聖節이므로 宣祖가 이른 아침부터 백관을 거느리고 對明 遙拜儀禮를 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의 11월 11일 실록 기사에는 “冬至 望闕禮를 時御所에서 행하다”라고 되어 있고, 의례의 무대가 時御所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서 말하는 時御所란 貞陵洞의 行宮, 즉 月山大君의 옛 저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¹¹⁴⁾ 그날은 선조의 생일¹¹⁵⁾이었으므로 議政府는 예물을 진상했으나 전시 중인 탓에 보통 때보다 검소했다고 한다.

그 후 임진왜란기에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선조는 正朝·聖節·冬至 望闕禮를 매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선조 29년의 聖節에는 望闕禮를 행했다는 기록이 없다. 나흘 전에 萬曆帝의 嫡后(隆慶帝의 皇后 陳氏)가 사망했다는 訃告가 조선에 도착했기 때문에 ‘停朝’(=輟朝. 조정의 정무를 쉬는 일)의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¹¹⁶⁾ 이에 수반하여 聖節을 축하하는 望闕禮를 부득이 정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예외를 제외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실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단지 왜란 이전과 이후는 실록 기사의 잔존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왜란기에는 명나라 지원군이 한반도에 상주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대명 요배의례를 權停禮로 간략하게 끝내는 것을 꺼렸음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선조 28년 聖節의 실록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上詣南別宮, 與天使行聖節望闕禮, 仍接見天使, (《宣祖實錄》 권66, 28년 8월 17일 정사조)

8월 17일의 聖節 때 선조는 南別宮에서 ‘天使’와 함께 聖節 望闕禮를 거행하였다(<표 2> 25). 종전의 기록과 다른 점은 조선 국왕이 ‘天使’와 대명 요배의례를 거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天使’란 豊臣秀吉을 일본국왕에 책봉하도록 명에서 파견된 ‘封倭天使’ 李宗城을 가리킨다. 이 해 4월 하순에 宣祖는 정사 李宗城·부사 楊方亨 일행을 慕華館에서 맞이했고,¹¹⁷⁾ 이후 南別宮에서 종종 회담이 열렸다. 冊封日本正使 李宗城은 이

114) “在西部皇華坊, 本月山大君第, 宣祖癸巳(=선조 26년), 自義州還都, 爲時御所, 光海主七年, 改號慶運宮, (後略)” (《大東地志》 권1, 漢城府, 宮室條, 明禮宮).

115) 《璿源系譜紀略》 璿源世系, 宣祖.

116) “仁聖皇太后 [皇帝母后也]崩逝, 停朝” (《宣祖實錄》 권78, 29년 8월 13일 무신조).

듬해인 宣祖 29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고,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서 도망하여 귀국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¹⁸⁾ 선조대에 명절과 명 사신의 체제기간이 겹쳤던 것은 선조 5년 11월 동지 이래로 두 번째이지만, 이번에는 萬曆帝의 聖節을 명 사신과 함께 축하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聖節 望闕禮는 대명관계를 유지해 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왕조국가의례이다. 특히 이번은 명 사신이 체제 중이므로 의례의 절차와 시각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의례 ‘자리’에 임하도록 사간원이 선조에게 조언하고 있다.¹¹⁹⁾ 중앙정부가 이번의 명 사신 방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南別宮이라는 공간의 이용이다. 임진왜란 후 南別宮에서는 적어도 4회에 걸쳐서 望闕禮가 거행되고 있다(<표 2> 20·21·25·39). 선조가 行宮으로 삼고 있던 貞陵洞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지리적 편리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장 李如松 일행이 한성을 탈환한 이래 이 南別宮은 명, 더 나아가서는 ‘皇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전시하 의례 실시상의 문제점

임진왜란이라는 전시하에 대명 요배의례를 거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왕도 한성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그런 속에서 궁중의례를 치르는 경우에 많은 곤란이 따랐을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조 29년 정월에 司憲府는 勅諭의 金령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이외의 자가 멋대로 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해에 선조는 正朝 望闕禮를 예정대로 끝냈는데(<표 2> 27),¹²⁰⁾ 그 사흘 뒤의 일이었다. 특히 正朝 望闕禮 때는 각 관청의 하인이 함부로 출입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던 모양이며, 사헌부는 당일의 파수를 파면할 것과 담당 부서의 조사를 요청했고,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 전란으로 궁궐의 正

117) 《宣祖實錄》 권62, 28년 4월 28일 경오조. 《宣祖修正實錄》 권29, 28년 4월조.

118) 李宗城이 도망한 사정은 佐島顯子, <日明講和交渉における朝鮮撤退問題 - 冊封正使の脱出をめぐる> 中村質 編, 1997.8 《鎖國と國際關係》(吉川弘文館)에 자세하다. 또한 李宗城이 도망한 후의 封倭政策에 대한 明 정부 내부의 반대론은, 小野和子, 전계서 <第二章 第二節 明日和平交渉をめぐる政争> 128~133 ; 三木聰, 전계 <萬曆封倭考(二)> 12~21

119) “司諫院啓曰, 聖節望闕禮, 乃莫大之禮, 況今天使來臨, 自上就彼行禮, 則節次早晚, 尤當詳審預講, 不可小有差違, (後略)上答曰, 依啓, (後略)”(《宣祖實錄》 권66, 28년 8월 19일 기미조).

120) <上初行望闕禮> (《宣祖實錄》 권71, 29년 정월 1일 무진조).

殿을 사용할 수 없었던 탓에 궁중의례도 時御所에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¹²¹⁾

선조 29년 12월 하순에는 司諫院이 習儀(의례의 예행연습)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원에 따르면, 전란 후 만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인데, 처음부터 완전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望闕禮의 習儀는 왕조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이며, 예행연습장은 주의 깊게 조사한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일의 예행연습장은 길가의 더러운 장소로 설정되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중요한 의례를 거행하기에는 난잡하며, 司諫院은 당해 관청의 당상관과 色郎廳(=郎官. 정5품관의 正郎과 정6품관의 佐郎)을 문초하도록 요청했고,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¹²²⁾ 이듬해 선조 30년 正朝의 실록 기사는 “望闕禮를 행하다”라는 기록이 고작인데(<표 2> 30),¹²³⁾ 황폐한 한성 안에서 궁중의례의 예행연습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선조 30년 8월의 聖節에도 《宣祖實錄》에는 “上께서 聖節의 望闕禮를 別殿에서 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표 2> 31),¹²⁴⁾ 기록상으로는 望闕禮가 별 탈 없이 거행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들 후 司憲府의 상소에 따르면, 당일에 트러블이 발생하였다. 이해의 聖節 望闕禮는 別殿에서 거행되었다. 戰時 중에 선조는 貞陵洞의 行宮에 기거했으며, 別殿은 行宮 안에 있던 전각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헌부에 따르면 이번 달 8월 17일의 望闕禮 때 대명 황제의 권위의 상징인 ‘闕牌’(한자로 ‘闕’이라는 글자를 새긴 목패, 闕字牌라고도 한다)¹²⁵⁾가 南別宮에서 도착했는데, 갑자기 악기 소리가 나서

121) “司憲府啓曰, 闕門之禁全不嚴肅, 常時雜人任意出入, 已爲寒心, 正朝望闕禮時, 尤不嚴禁, 各司下人闖入填塞, 喧聒莫甚, 極爲駭愕, 其日外門守門將, 並命罷職, 兵曹不能檢勑, 亦爲非矣, 色郎廳亦命推考, 答曰, 依啓”(《宣祖實錄》 권71, 29년 정월 3일 경오조).

122) “司諫院正言洪慶臣來啓曰, 亂後庶事草創, 大小規模固難責備, 至於望闕禮習儀, 莫重之事, 而行禮處所不可不審定, 而今日習儀乃設於路傍污穢之地, 非但觀瞻未安, 其於大禮亦涉褻褻. 請該曹堂上·色郎廳, 並命推考, (中略) 答曰, 依啓”(《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21일 계미조).

123) 《宣祖實錄》 권84, 30년 정월 1일 임진조.

124) “曉, 王世子問安, 上行聖節望闕禮於別殿, 禮罷後, 王世子問安”(《宣祖實錄》 권91, 30년 8월 17일 을해조).

125) 朝鮮總督府 編, 《朝鮮古蹟圖譜》 제11책 (朝鮮總督府, 1931년 3월. 名著出版, 1973년 3월 復刻), 朝鮮時代, 客舍, 1580의 圖版 5092 <開城府客舍太平館殿牌及闕牌> 참조. 純祖(재위 1800~34년) 대에 중국 사신의 접대 의례를 정리한 《賓禮總覽》(東京大學總合圖書館 阿川文庫 소장) 권2, 儀註, 勅使望闕禮條 말미의 割註에 “敕使留館時, 若遇聖節·正朝, 則移設闕牌於西宴廳, 而都監堂上以下行禮如右, 若在途, 則行禮於站上闕牌前”이라고 되어 있으며, 開城의 太平館처럼 驛站上의 客舍에도 闕牌가 있었다.

선조를 놀라게 했으며, 사정을 하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는 통상 해당 관청의 관원이 즉시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궁궐 안을 놀라게 했던 일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었다. 그래서 사헌부는 이번에도 色郎廳의 수사를 요청했고, 선조는 재가를 내려 承旨(承政院의 정3품 堂上官)에게 문초하도록 하명했다.¹²⁶⁾ 望闕禮가 엄숙한 의례 공간 속에서 거행되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또 이 사례에서 추측할 때, 명 황제를 상징하는 ‘闕牌’가 임진왜란기에는 南別宮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역시 한성 안의 南別宮은 당시 ‘皇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선조 29년 9월 초에 大坂城에서 日明 강화교섭이 결렬되고, 이 해 宣祖 30년 8월 초에는 일본군이 충청·전라·경상도로 진출 중이었는데,¹²⁷⁾ 한성에서는 엄숙하게 대명 요배의례가 거행되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동아시아 세계의 조선과 명

宣祖 31년의 正朝도 역시 선조는 貞陵洞의 行宮에서 지냈다. 실록 기사에는 “上께서 세자 및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望闕禮를 행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선조가 예법대로 왕세자 光海君 및 문무백관과 함께 正朝를 축하했다는 사실을 전한다(<표 2> 33).¹²⁸⁾ 이해의 동지 때도 선조는 이른 아침인 丑時(오전 2시경)부터 別殿에서 望闕禮를 거행하고 있는데(<표 2> 33),¹²⁹⁾ 8월 17일의 聖節은 望闕禮 기록이 빠졌다. 豊臣秀吉이 京都의 伏見城에서 사망한 것은 그 직후의 일이다.

왜란 종식기에도 正朝·동지 望闕禮는 충실하게 거행되고 있었으며, 기록 형태 그 자체는 간략하지만, 오히려 명에 대한 고마움이 증폭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이른바 ‘丁應泰 誣奏事件’을 받고 兵曹參知(정3품 당상관) 李廷龜가 製述

126) “司憲府啓曰, (中略)本月十七日望闕禮時, 闕牌自南別宮陪來, 不時鼓吹震天, 自上驚怪, 至於下間, 爲該曹者, 所當登時傳語以啓, 而專不致察, 使闕內震驚, 極爲未便, 請色郎廳推考, (中略)上曰, 依啓, 承旨并推考”(《宣祖實錄》 권91, 30년 8월 19일 정축조).

127) 石原道博, 전개서 《文祿·慶長の役》 211~212. 中村榮孝, 전개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212~215; 李焜錫, 전개서 <第四篇 第十二章 第一節 作戰第六年(1597年)> 523; 北島万次, 전개서 《豊臣秀吉の朝鮮侵略》 191~194; 中野等, 전개서 <V. 慶長の再派兵> 311~315

128) “上在貞陵洞行宮, 上率世子及群臣, 行望闕禮, 王世子問安”(《宣祖實錄》 권96, 31년 정월 1일 정해조)

129) “丑時, 上行望闕禮於別殿〔賀至日也〕”(《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5일 병오조)

한 奏文(국왕 명의로 발급하는 외교문서)이다. 선조 31년 6월에 명군 총독 邢玠의 贊書(幕僚)였던 丁應泰가 蔚山 공방전은 패배이며 軍務經理 楊鎬¹³⁰⁾는 그 사실을 은폐했다고 萬曆帝에게 상주하였다. 丁應泰의 상주문은 조선이 일본과 결탁했으며, 또한 楊鎬가 조선에서 축성한 것은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¹³¹⁾ 이 때문에 선조는 자주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사실을 변명했으며, 이 해 10월에는 제3차 陳奏使로 正使 우의정 李恒福 이하 부사 李廷龜·서장관 黃汝一 일행을 명으로 파견하였다. 이 사건을 해결로 이끈 李廷龜의 奏文¹³²⁾에는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조선과 명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기술이 있다.

奏文曰, 日者, 贊書丁應泰, 以築城一事, 搆臣以不測之語, 臣驚惶痛迫, 已經具本哀籲去訖, 方西望雪涕, 忭愴俟命, (中略)小邦自先臣(=康獻王)以來, 血心事上, 盡禮盡誠, 律用大明律, 曆用大統曆, 服色·禮義無不慕尙, 而天使之來, 有迎詔儀, 陪臣之去, 有拜表禮, 正·至·聖節, 有望闕之禮, 率皆虔心精白, 肅敬將事, 一如對越天威, 以至各樣文書·公私簡牘, 皆奉年號, 習爲恒式, (中略) [兵曹參知李廷龜之製也], (《宣祖實錄》 권105, 31년 10월 21일 계유조)

이 奏文에서는 먼저 丁應泰가 축성 문제를 날조하여 宣祖를 모함하려고 했기 때문에, 놀란 선조는 이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萬曆帝에게 무고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신하인 선조로서는 명 황제가 거주하는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삼가 하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小邦’, 즉 조선이 ‘先臣’ 태조 李成桂 이래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上國’인 명에게 사대의 예를 다 해 왔음을 언급한 부분이다.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관계는 우선 조선에서 (1)율(형법)은 《大明律》을 운용하고, (2)달

130) 이듬해 宣祖 32년 9월에는 邢玠를 제사하는 宣武祠가 漢城 안에 완성되었고, 뒷날 宣祖 37년 7월에는 宣祖의 뜻에 따라 楊鎬와 함께 제사지냈다. 中村榮孝, 전개 <朝鮮의慕明思想と大報壇> 198 ; 韓明基, 전개서 <제1부 제1장 명군 참전과 정치적 영향> 82~84. 桑野榮治, 전개 <朝鮮後期における國家祭祀儀禮の變動> 37~39

131) 朝鮮·明·日本에 있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李啓煌, 전개서 <第一章 《丁應泰認奏事件》と日·明將らの講和交渉>에 상세하다.

132) 李廷龜 유고집 《月沙先生集》(《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69 (민족문화추진회, 1991년 11월, 수록). 底本은 1688년 대구에서 목판으로 重刊된 原集과 1720년에 같은 대구에서 追刻된 別集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본) 권21, 戊戌辨誣錄, 丁主事〔應泰〕參論本國辨誣奏〔戊戌冬〕條는 <朝鮮國王臣姓諱謹奏>라는 글로 시작하는 조금 긴 문장의 奏文이다. 다만 《宣祖實錄》에 수록된 奏文에서 인용한 부분만을 한정해서 보자면, 약간의 문자의 異同·삭제가 있기는 하지만 글의 내용에 바뀐 것은 없다. 또한 奏文의 발급 주체가 조선국왕임에 비하여 明文의 발급 주체는 陪臣 즉 조선관료이다. 金暲綠, 2005.6 <朝鮮後期 事大文書の 종류와 성격> 《韓國文化》 35 (서울). 후일 曹圭益他編, 전개 《연행록연구총서(역사)》에 再錄) 199·204

력은 명에서 하사한 《大統曆》을 채택하고 있다. 복색(의복과 車馬 등의 색깔)과 의례 역시 명의 제도를 숭상하며, (3)명 사신이 방문하면 迎詔儀가 있고, (4)조선 국왕의 신하를 황제의 陪臣으로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拜表 의례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5)正朝·冬至·聖節 때가 되면 조선 국왕은 궁궐에서 望闕禮를 거행한다. 선조가 이들 의례를 경건하고 결백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거행하는 것은 오로지 천자인 명 황제의 위광에 보답하려는 까닭이다. 덧붙여서 조선에서는 (6)각종 행정문서는 물론 공사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명의 연호를 쓰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과장도 없으며,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조선과 명의 국제관계가 명쾌하게 적혀 있다. 먼저 (1)에 관해서는 《經國大典》 刑典 첫머리의 用律條에 “大明律을 쓴다”고 규정하듯이 조선에서는 형법규범으로서 《大明律》을 준용하며, 이미 太祖 4년(1395) 2월에 이두(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한국어 표기법)로 주해한 《大明律直解》 30권이 간행되었다.¹³³⁾ (2)《大統曆》의 경우 고려 공민왕 19년(洪武 3, 1370) 5월에 洪武帝가 冕服과 함께 고려에 보냈다.¹³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뒤에도, 예를 들어서 洪武帝의 뒤를 이어 建文帝가 즉위하자 이듬해인 定宗 원년(建文 원년, 1399)의 《大統曆》이 조선으로 왔고, 이후 태종 4년(永樂 2, 1404)부터 《大統曆》 100부의 하사가 정례화된다.¹³⁵⁾ 선조 연간에는, 예를 들어서 선조 6년(萬曆 원년, 1573) 11월의 《明實錄》에 “조선국에 大統曆日 100부를 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선조 36년 3월의 실록 기사에는 “大統曆 100부를 天朝에서 보내오다”라는 기록이 보이며, 冬至使가 귀국하는 길에 《大統曆》 100부를 들여오고 있다.¹³⁶⁾ 《大明會典》에 따르면 萬曆 연간 당시는 매년 11월 1일에 이듬해의 《大統曆》을 백관에게 給賜한 다음에 전국에 공포하였고, “琉球·占城 등의 외국에게 正統 연간(1436~49년) 이전에는 朝貢 때 각기 王曆 1本과 民曆 10本을 급여하였다. 현재 항상 급여하고 있는 것은 朝鮮國 뿐이며, 王曆 1本과 民曆 10本

133) 《經國大典》 권5, 刑典, 用律條.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課 編, 《校訂 大明律直解》(조선총독부, 경성, 1936년 11월) 권말의 花村美樹, <大明律直解說> 11~13

134) 《高麗史》 권42, 世家42, 恭愍王 19년 5월 26일 갑인조; 同書 권72, 輿服志1, 冠服, 祭服, 恭愍王 19년 5월조; 《高麗史節要》 권29, 恭愍王 19년 5월조. 또 《明實錄》에 “高麗使者成惟得等辭歸, 上以書諭其國王王顛(=恭愍王)曰, (中略)今賜王冠服·樂器·陪臣冠服及洪武三年大統曆·六經·四書·通鑑·漢書, 至可領也, (後略)”(《明太祖實錄》 권46, 洪武 2년 10월 임술 1일)라고 보인다. 고려의 책봉체제 편입은 末松保和, 전제서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의 <第二章 高麗と明の建國> 138~140; 沈載錫, 2002.5 《高麗國王冊封研究》(慧眼, 서울) <제5장 고려와元の 책봉관계> 227~229

135) 《太祖實錄》 권15, 7년 12월 22일 갑자조; 《太宗實錄》 권7, 4년 3월 27일 무신조.

136) 《明神宗實錄》 권19, 원년 11월 25일 신축조; 《宣祖實錄》 권160, 36년 3월 8일 갑자조.

이다”라고 하여¹³⁷⁾ 조선이 琉球·占城보다 우대받았던 충실한 조공국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蕃王’이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책봉체제에 편입되면 “正朔을 받든다”(曆을 나누어 받고, 그 정월 초하루에 따르는 것)는 ‘반대급부’가 있으며,¹³⁸⁾ 天子에 의한 시간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¹³⁹⁾ 이러한 조선의 대명외교 자세는 (6)의 명의 연호 사용과도 상통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임진왜란과 명청 교체를 거치면서 조선 사회에서는 이른바 ‘崇禎紀年’¹⁴⁰⁾을 사용하는 관습이 퍼졌다. 인조 15년(1637)에 공식문서에서 명의 연호를 폐지하고 청의 正朔을 받들었음에도 불구하고, 祭禮 때 낭독하는 祭文 외에 편지와 墓誌에는 대명제국 최후의 황제인 毅宗 崇禎帝(재위 1627~44년)의 연호를 즐겨 사용하였다. 특히 명나라 최후의 해가 된 ‘崇禎 甲申’(인조 22년, 1644)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崇禎’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崇禎紀年法은 중화의 明에 假託하여 ‘小中華’를 自認하는 小中華意識¹⁴¹⁾의 상징이다.

대명외교의례에 속하는 (3)과 (4)의 迎詔儀 및 拜表儀는 《國朝五禮儀》 嘉禮에 그 儀註가 수록되어 있다.¹⁴²⁾ 이 중에 明使迎接儀禮는 이전 왕조의 紀傳體 史書인 《高麗史》 禮志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 고려 恭愍王과 명 洪武帝의 책봉관계가 시작된 시기에 명의 예법을 도입하여 제정·운영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¹⁴³⁾ 그리고 (5)가本章에서 주목했던 正朝·冬至·聖節의 望闕禮이다. 李山海가 쓴 《宣宗大王穆陵誌》에서도 선조의 대명 외교자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前略) 乃於戊申(=선조 41년)二月初一日, 薨於貞陵洞行宮之正寢, 壽五十七, 在位四十一年,

137) “(前略) 凡每歲進御覽月令曆·大統曆·七政躔度曆, 洪武年間, 以九月初一日進, 後以十一月初一日進, 當日以大統曆給賜百官, 頒行天下, (中略) 如琉球·占城等外國, 正統以前, 俱因朝貢, 每國給與王曆一本·民曆十本, 今常給者惟朝鮮國, 王曆一本·民曆一百本, (後略)” (《萬曆大明會典》 권 223, 欽天監條).

138) 藤田亮策, 1963.3 《朝鮮學論考》(藤田先生記念事業會) <朝鮮の年號と紀年> 261

139) 大井剛 <年號論> (荒野泰典他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V. 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學出版會, 1983년 1월) 329.

140) 崇禎紀年法の 용례는 藤田亮策, 전계 <朝鮮の年號と紀年> 327~331

141) 이른바 小中華意識에 관해서는 한국의 각 왕조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華夷秩序와 인식을 서술한 山内弘一, 2003.8 《朝鮮からみた華夷思想》(山川出版社)가 유익하다. 또 河宇鳳, 2006.11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慧眼, 서울). 일본어 역은 金兩基 監譯, 2008.1 《朝鮮王朝時代の世界觀と日本認識》(明石書店) <제1부 제2장 조선후기 대외인식의 구조와 추이> 참조.

142) 《國朝五禮儀》 권3, 嘉禮, 迎詔書儀 및 拜表儀〔拜箋附〕.

143) 《高麗史》 권65, 禮志7, 賓禮, 迎大明詔使儀條. 奥村周司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 - 十一, 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제110책, 早稻田大學史學會, 1984년 3월) 30

王剛毅果斷，恭儉慈仁，誠孝出天，英智過人，迎詔拜表之儀，聖節望闕之禮，率皆虔心精白，肅敬將事，雖在顛沛流離之際，未嘗少懈，(中略)宮中得一珍味，則必置之案上，西望拜祝曰，欲獻吾皇，何可得也，瞻戴之誠，不啻如孝子之慕父母，嘗語臣隣，一則曰皇恩，二則曰皇恩，一念對越，如在左右，(後略)(《宣祖實錄》 권221, 41년 2월조, 誌文)

誌文에서는 선조의 강직하고 고결함과 영특한 지혜를 칭송한 뒤에, 선조가 항상 迎詔·拜表儀와 望闕禮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했으며, 일찍이 임진왜란 당시 유랑할 때(‘壬辰播遷’)에도 태만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 본 李廷龜의 진주문과 유사한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기에도 正朝·冬至 및 聖節의 望闕禮를 성실하게 거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도 황제의 은혜, 둘째도 황제의 은혜라면서 항상 ‘對越’(천지신명에게 대답하는 것)하는 것처럼 선조가 신하에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이다. 임진왜란을 경험한 조선 국왕이 ‘再造之恩’에 감격하고, 마침내 명칭 교체 후에 조선 소중화의식이 고양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¹⁴⁴⁾

4. 임진왜란 후의 望闕禮

1) 朝賀禮의 정제

임진왜란 이후 正朝·冬至 望闕禮가 충실하게 거행되고 있던 반면에, 望闕禮가 끝난 후 개최되어야 할 朝賀禮는 시행된 흔적이 거의 없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에 든 선조 35년(1602) 10월의 실록 기사가 명쾌하게 대답해 줄 것이다.

144) 中村榮孝, 전개 <朝鮮의慕明思想と大報壇> ; 鄭玉子, 1998.5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一志社, 서울) < 2. 대보단(大報壇)의 창설 > ; 李泰鎮, 1994.12 <조선 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 제10호(春川) ; 桑野榮治 <朝鮮小中華意識の形成と展開－大報壇祭祀の整備過程を中心> 朴忠錫·渡邊浩 編, 2001.5 《國家理念と對外認識－17～19世紀(日韓共同研究叢書3)》(慶應義塾大學出版會). 한국어판은 朴忠錫·渡邊浩 編, 2002.2 《국가이념과 대외인식－17～19세기(한일공동연구총서3)》(亞研出版部, 서울). <再造之恩>의 형성 배경과 顯彰 사업의 전개에 관해서는 韓明基, 전개서 <제1부 제1장 명군 참전과 정치적 영향> 67~88 외에 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韓日關係史研究論集編纂委員會 編, 2005.6 《임진왜란과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5)》(景仁文化社, 서울) 118~122 ; 同,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59집(서울)에 상세하다.

禮曹啓曰, 亂後庶事草創, 章服不備, 禮文所載本朝陳賀各禮, 一切廢而不行, 極爲未安, 如正至 誕日王世子百官朝賀儀, 王世子嬪朝賀儀, 正至會儀, 中宮正至誕日命婦朝賀儀, 中宮正至會命婦 儀, 中宮正至誕日王世子朝賀儀, 王世子嬪朝賀儀, 中宮正至誕日百官朝賀儀, 正至生辰百官賀王 世子儀, 朔望王世子百官朝賀等是也, 目今冕服新降, 東宮冕服及百官章服亦已製備, 前項各儀, 雖 不得一一舉行, 其中不可廢之大禮, 則似當臨時稟裁講行, 敢啓, 傳曰, 允,
(《宣祖實錄》 권155, 35년 10월 25일 계축조)

禮曹의 上啓에 의하면, 전란으로 章服(禮服)을 갖추 수 없고, 그 때문에 왕조 정부의 의례서, 즉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각종 하례는 모두 정지되고 실제로 거행되지 않았다. 이 실록 기사에 보이는 ‘正至誕日王世子百官朝賀儀’란 왕세자와 백관이 正朝·冬至를 축하하는 朝賀禮(국왕의 생일도 이에 준한다)을 가리키며, ‘正至會儀’는 朝賀禮에 이어서 궁궐에서 개최되는 會禮宴을 뜻한다.¹⁴⁵⁾ 望闕禮는 명 황제를 위하여, 朝賀禮는 조선 국왕을 위하여 명절을 축하하는 궁중의례이지만,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비상시에 朝賀禮보다 望闕禮를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이 해의 正朝의 기록에 의하면, 선조는 이른 아침부터 백관을 거느리고 望闕禮를 거행했고, 나중에 중추부판사(중1품) 李德馨이 인솔하는 대신과 2품 이상의 고급관료가 선조를 問安했다고 전하며(<표 2> 43),¹⁴⁶⁾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 朝賀禮를 올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壬辰播遷’ 때 분실한 선조의 誥命과 冕服은 이제 萬曆帝가 다시 하사하였고,¹⁴⁷⁾ 왕세자의 冕服과 백관의 예복도 그러저럭 갖추었다. 그리하여 《國朝五禮儀》에서 정한 賀禮를 모두 거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폐지할 수 없는 大禮는 임시로 국왕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후에 正朝·冬至 朝賀禮가 부활된 것일까? 이 해 11월 동지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卯時, 上行冬至望闕禮, ○王世子問安, ○百官以權停例不陳賀〔前此, 有上教故也〕, 只問安, 答曰, 知道, (《宣祖實錄》 권156, 35년 11월 10일 정묘조)

正朝와 마찬가지로 선조는 우선 萬曆帝가 맞이한 동지를 축하하려고 望闕禮를 행했다. 이어서 光海君이 선조에게 문안을 드리고, 문무백관 역시 문안드리는 것에 그치고

145)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誕日賀附]조 및 正至會儀 조.
146) “卯初, 上親臨率百官, 行正朝賀禮, ○大臣〔判中樞府事李德馨爲班首〕及二品以上問安, 答曰, 知道”(《宣祖實錄》 권145, 35년 정월 1일 갑오조).
147) “聖節使趙挺等回自京師, 帝賜誥命·冕服[壬辰播遷, 命·服莫守, 至是往請而補賜焉], 上親迎于郊外, 至闕內行四拜禮, 受中外賀, 加百官資, 頒教于中外”(《宣祖實錄》 권146, 35년 2월 8일 신미조).

있다(<표 2> 45). 요컨대 동지 朝賀禮는 약식의 權停禮로 끝내고, 《國朝五禮儀》에서 정한 것처럼 문무백관이 조선 국왕을 위하여 성대하게 동지를 축하하는 일은 없었다. 실록 기사의 割註에 “이보다 이전에 국왕 전하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선조는 사전에 동지 朝賀禮를 약식으로 거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명절에 거행되는 朝賀禮의 간략화는 그 후에도 상례화되었다. 훗날 선조 38년 10월에 우승지는 “이번에 국왕 전하께서는 다시 탄신일과 동지의 朝賀禮를 약식으로 하도록 왕명을 내리셨다. 우리 신하들의 심정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고 서두를 떼고 朝賀禮의 부활을 선조에게 요청하게 된다.¹⁴⁸⁾ 원래 조선에서는 명절이 되면 백관들이 모두 의용을 갖춘 궁궐로 나아가 예물을 올리고 龍顏을 우러르며, 신하로서의 복종을 표현하는 舞蹈禮와 축하의 말을 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10여년 동안 명절 때마다 權停禮를 하명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正朝·동지의 朝賀禮가 정제되어 있던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右承旨는 이후부터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朝賀禮를 거행하도록 선조에게 요청했다. 물론 대신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선조는 “반드시 약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답했다.

그 결과 이 해 11월 동지 때 선조가 望闕禮를 끝마치자 왕세자 光海君은 백관을 거느리고 朝賀禮를 행하고 있다(<표 2> 54).¹⁴⁹⁾ 다만 正朝·동지에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朝賀禮를 거행했던 것은 선조대에는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대체로 당시는 종묘와 궁궐의 개축 및 수선을 우선했기 때문에 비좁은 임시 궁궐에서 望闕禮와 朝賀禮를 거행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¹⁵⁰⁾

148) “右承旨鄭穀以禮曹言啓曰, 今此誕日及冬至陳賀之禮, 又命權停, 群下之情不勝缺然, 凡遇節日, 百僚咸造明庭, 備其儀容, 修其禮物, 瞻望日表, 相與舞蹈, 而上壽稱賀者, 臣子之至情也, 十餘年來, 自上每下權停之教, (中略)兩日陳賀時, 親臨舉動, 雖不敢更爲啓達, 亦有權停例行禮之規, 自今以後, 遇節日, 容令王世子率百官行此禮, 則臣子享上之道, 庶幾少伸, 大臣之意亦然, 敢此仰稟, 傳曰, 不必” (《宣祖實錄》 권192, 38년 10월 22일 계해조).

149) “上行望闕禮, ○王世子率百官, 行陳賀禮” (《宣祖實錄》 권193, 38년 11월 12일 임오조).

150) “辰時, 上御別殿, (中略)柳永慶(=領議政兼經筵領事)曰, 宗廟·宮闕不可不營建, 宜先料理可也, 朴弘老(=예조판서 겸 特進官)曰, 自上接見天將之時及望闕禮時, 大內甚狹, 百官班行不成模樣, 西牆外有空地, 構一小室以爲御殿, 用於朝會時何如, 上曰, 可爲則爲之, (後略)” (《宣祖實錄》 권193, 38년 11월 3일 계유조).

2) 宣祖 즉위 40년째의 望闕禮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조선 국왕이 명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경우, 외교문서인 表(千秋使의 경우는 箋)를 使節에게 주고, 景福宮 勤政殿의 正門인 勤政門까지 使節을 전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왕조국가의 의례를 ‘拜表儀’라고 하며, 그 의례공간, 즉 문무백관 및 의장대의 배치는 正朝·冬至·聖節의 望闕禮를 행하는 경우와 거의 같다.¹⁵¹⁾ 예를 들면 萬曆 29년(선조 34) 10월에 명에서 萬曆帝가 皇長子를 황태자(나중의 光宗 泰昌帝)로 책봉하자¹⁵²⁾ 이듬해 정월에 조선정부는 황태자 책봉을 축하하는 進賀使를 파견하며, 그때 선조는 몸소 拜表儀를 거행하였다.¹⁵³⁾ 선조 35년 5월의 실록 기사에는 “辰時(=오전 8시경)에 上께서 千秋拜箋禮를 행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선조는 명으로 千秋使를 파견할 때 이른 아침부터 拜箋儀를 거행하고 있다.¹⁵⁴⁾ 선조에게는 처음 치르는 拜箋儀이며, 시행 방법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¹⁵⁵⁾ 이어서 같은 해 8월 11일에는 千秋節을 축하하는 望宮禮를 행했다.¹⁵⁶⁾ 선조 연간에는 이 기록이 처음 보이는데, 千秋 望宮禮의 시행 기록이 모두 2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44·47).

그런데 이로부터 4년 뒤인 선조 39년 4월에는 특이한 사례 2건이 보인다. 이하에서 그 기록을 열거해 보자(<표 2> 56·57).

卯時, 行望闕禮, 千秋使洪慶臣·書狀官李馨遠等赴京師, (《宣祖實錄》 권198, 39년 4월 26일 갑자조)

卯時, 行望闕禮, 聖節使李覺·書狀官柳慶宗等赴京師, (같은 책 권198, 39년 4월 29일 정묘조)

전자는 千秋使로서 예조참관 洪慶臣 일행이 명에 파견되었을 당시의 기록이며, 3일

151)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拜表儀〔拜箋附〕. 또 《國朝五禮序例》 권2, 嘉禮, 排班圖, 正至及聖節望闕行禮之圖, 참조.

152) 《明神宗實錄》 권364, 萬曆 29년 10월 15일 기묘조. 《明光宗實錄》 권1, 總書.

153) “上親臨, 行進賀拜表禮”(《宣祖實錄》 권145, 35년 정월 7일 경자조).

154) 《宣祖實錄》 권150, 35년 5월 1일 임술조.

155) 황제를 상징하는 ‘闕牌’에 대하여 황태자를 상징하는 ‘宮牌’가 있을 것은 틀림없지만, 선조는 보지 못했으므로 禮曹에 그것을 조사하라고 명한 기록이 있다. 《宣祖實錄》 권150, 35년 5월 3일 갑자조.

156) “卯時, 上行千秋望宮禮”(《宣祖實錄》 권153, 35년 8월 11일 경자조).

후에는 聖節使로서 호조참판 李筿 일행이 역시 北京으로 향했다.¹⁵⁷⁾ 언뜻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千秋使와 聖節使의 北京 파견에 앞서서 선조는 어느 경우든 이른 아침부터 望闕禮를 거행하였다. 조선의 예와 법에서 조선 국왕이 望闕禮를 거행하는 것은 正朝·冬至·聖節과 千秋節(엄밀하게는 望宮禮라고 한다)이며, 조공사절을 파견할 때 望闕禮를 실시하는 일은 없다. 조선 국왕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조 39년은 正朝와 聖節에도 통상대로 望闕禮가 거행되었으며,¹⁵⁸⁾ 선조는 이 1년 동안 모두 4회의 대명 요배의례를 거행한 것이 된다(<표 2> 55~58).

그러면 선조는 왜 聖節使와 千秋使 파견에 즈음하여 望闕禮를 거행했던 것일까? 이 해 宣祖 39년은 宣祖의 즉위 40주년에 해당하며, 정월 15일에는 약식 賀禮에 이어서 光海君과 百官이 각기 賀箋을 진상하고 전국에 恩赦令을 頒布하였다.¹⁵⁹⁾ 3월 상순에는 宣祖에게 대망의 嫡子(永昌大君)가 탄생하였고,¹⁶⁰⁾ 더군다나 4월 중순에는 明의 皇太子에게 第1子(뒷날의 熹宗天啓帝, 재위 1620~27년)가 탄생했다는 詔勅을 전달하는 明使 朱之蕃(翰林院 修撰, 從6品)·副使 梁有年(禮科 左給事中, 從7品) 일행¹⁶¹⁾을 한양에서 맞이하고 있으며, 조선 국내외에서는 경축 무드가 높아져 있었던 것이다. 太平館에서 迎詔儀를 무사히 끝낸 宣祖는 “內服同様の 대우에 皇恩이 망극하다”고 하며 明使의 來朝에 감사드리고, “小邦은 皇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니 昊天이 망극하다”고 하며 국가 보전의 ‘皇恩’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다.¹⁶²⁾ 이미 壬辰倭亂은 종식되었고, 조선과 일본의 德川 정권과는 通信使 파견의 가부를 놓고 논의 중이던 무렵이었다.¹⁶³⁾ 조

157) 당시 조선국왕 명의의 表·箋은 朝鮮史編修會 編, 《事大文軌(朝鮮史料叢刊 第7)》(朝鮮總督府, 京城) (1935년 3월 影印. 底本은 서울大學校奎章閣藏本) 卷46, 萬曆 34년 8월 17일자, 朝鮮國王表(聖節賀表), 및 萬曆 34년 8월 11일자, 朝鮮國王箋(千秋賀箋).

158) 《宣祖實錄》 권195, 39년 정월 1일 경오조, 同書 권202, 39년 8월 17일 계축조.

159) “午時, 以權停禮行賀禮, 王世子率百官, 進箋稱賀, 頒赦文于八道, (後略)”(《宣祖實錄》 권195, 39년 정월 15일 갑신조).

160) 《宣祖實錄》 권197, 39년 3월 6일 갑술조. 이날, 領議政 柳永慶은 左副承旨를 통해서 永昌大君의 탄생을 축하하는 賀禮의 거행을 건의하였다. 당시 光海君에 대한 柳永慶의 견제는 具德會, 1988.12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体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 20集 (서울大學校人文大學國史學科, 서울) 262~265 ; 韓明基, 2000.7 《광해군 -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歷史批評社, 서울) 75~77

161) 《明神宗實錄》 권416, 萬曆 33년 12월 15일 을묘조.

162) “辰時末, 上先到太平館, 入幕次, 兩使隨後入來, 上祇迎詔敕, 行宣詔禮畢, 上入幕次, (中略)上詣天使前, 行拜禮後, 上曰, 皇孫誕生, 大人來臨, 視同內服, 皇恩罔極, 大人又許留詔, 尤極多謝, 天使曰, 帝命也, (中略)上行茶禮畢, 上曰, 小邦蒙皇恩, 至今保全, 昊天罔極, (後略)”(《宣祖實錄》 권198, 39년 4월 11일 기유조).

선왕조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도 변모했지만, 선조의 萬曆帝에 대한 ‘皇恩’은 흔들리지 않았다. 더군다나 明使의 漢城 체재 중에 領議政 李恒福 등이 明使에게 光海君의 王世子 冊封을 요청하는 公文(陪臣의 이름으로 발급하는 문서)을 제출하고 萬曆帝에게 上奏를 의뢰하였다.¹⁶⁴⁾ 光海君은 壬辰倭亂 발발 직후 王世子로 冊立되었지만, 宣祖의 嫡子가 아닌 庶子여서 아직까지 明으로부터 정식으로 朝鮮의 王世子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公文을 받은 明使는 王世子 冊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使臣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의뢰를 거부하며 公文을 돌려주었다.¹⁶⁵⁾ 光海君의 책봉문제가 그에게 ‘反明感情’을 품을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韓明基씨가 지적하였다.¹⁶⁶⁾ 아마도 4월 하순에 실시된 千秋使와 聖節使 파견에 따른 望闕禮의 배경에는 光海君의 冊封을 기대하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음에 틀림없다.

뒷날 宣祖는 冬至 望闕禮도 거행할 예정이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전에 중지하도록 하명하였다(<表 2> 58). 선조는 “望闕禮를 시행할 수 없는 일은 매우 유감”이라고 그 심정을 承政院에 말하였다.¹⁶⁷⁾ 여기서 상기되는 것이 成宗의 발언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成宗은 “내가 望闕禮를 행할 때, 몸은 여기 조선에 있지만 친히 황제를 배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한 적이 있다.¹⁶⁸⁾ 짧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에 있어서 望闕禮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국왕은 매년 冬至 때는 冬至使를, 명 황제의 생일에는 聖節使를 파견하는 등 명절 때마다 陪臣의 자격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함으로써 對明事大의 예를 극진하게 올렸다. 그러나 조선 국왕이

163) 中村榮孝, 전계서 <三 江戸時代の日鮮關係> 264 ; 三宅英利, 전계서 <第二篇 第一章 幕藩体制 確立期の通信使> 155~158

164) 《宣祖實錄》 권198, 39년 4월 14일·16일조 ; 《事大文軌》 권46, 萬曆 34년 4월 16일자, 朝鮮國原任議政府領議政李恒福等呈禮部(請封世子事百官呈)

165) “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 昨日百官呈文于兩天使, 則答曰, 此乃重事, 徐國奏聞于天朝, 則禮部·禮科, 自當處置, 非出使之人所預知云, 呈文還出給矣, 傳曰, 知”(《宣祖實錄》 권198, 39년 4월 17일 을묘조).

166) 韓明基, 전계서 <제2부 제1장 광해군 초·중반 조명 사이의 쟁점> 187~195 ; 同, 전계 《광해군》 72~74

167) “行都承旨黃暹以本院意啓曰, 聖候愆和, 方在調攝之中, 冬至望闕禮, 若冒寒行之, 則必致添傷, 事勢如此, 決不可爲, 臣等方議請停, 今承下教, 極爲允當, 本朝陳賀, 則八方既已進箋, 王世子·大臣率百官行禮, 自上雖不得親臨, 自有權停禮, 恐不可全然闕之, (中略)傳曰, 望闕禮不得行之, 極爲未安, 而方患痰喘, 不得出外, 勢難行禮矣, 本朝陳賀, 則尤不必行之事, 權僞爲可”(《宣祖實錄》 권205, 39년 11월 21일 병술조). 이미 전국에서 冬至를 축하하는 箋이 漢城에 도착했으며, 당일은 宣祖가 불참한 채 光海君과 大臣이 百官을 거느리고 朝賀禮를 거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8) 전계, 주17)의 《成宗實錄》 권284, 24년 11월 8일 기해조 참조.

‘蕃王’으로서 직접 帝都 북경으로 가서 명 황제에게 배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선 국왕은 부득이 그 대체수단으로 望闕禮를 거행하는 것이다. 조선 국왕에게 있어서 望闕禮는天子를 알현하는 것과 동등한 國事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李成茂씨는 조선 국왕의 정치권력의 하나로서 외교권에 주목하고, “국왕이 직접 외국에 가는 일은 없었으나(望闕禮 만은 행했다), 외국 사신은 직접 접견했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다.¹⁶⁹⁾ 그러나 “望闕禮 만은 행했다”는 서술은 이 儀禮의 성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望闕禮란 조선 국왕이 직접 紫禁城의 황제를 알현하는 것과 동등한 대명외교의례이며, 조선 국내에서는 이것을 정치권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Ⅲ. ‘日本國王’ 豊臣秀吉의 책봉의례

1. 일본국왕 책봉사 楊方亨의 復命報告

일본국왕 책봉사 李宗城이 釜山에서 도망간(宣祖 29년 4월) 후, 명 정부에서는 副使 楊方亨을 正使로, 遊擊 沈惟敬을 副使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종래에 책봉사를 人選할 때, 琉球國王에 대하여는 文臣을, ‘虜王’ 즉 蠻族의 왕에 대하여는 武官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또한 北京에서 미리 사자를 파견한다는 시간적인 지연도 고려한 결과 萬曆帝가 兵部尙書 石星의 上奏를 받고 최종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¹⁷⁰⁾ “외국은 영구불변으로 책봉체제 속에 가뒀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황제”¹⁷¹⁾에게도 다분히 문제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한편 豊臣秀吉은 이들 明使 일행의 來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文祿 4년(宣祖 28, 1595) 5월 하순에 秀吉은 小西行長·寺澤正成 앞으로 沈惟敬

169) 李成茂, 전게서 <제1부 제1장 조선시대의 왕권> 28

170) 《明神宗實錄》 권297, 萬曆 24년 5월 4일 경오조 ; 三木聰, 전게 <万曆封倭考(二)> 23~25 ; 壬辰倭亂 후 명 정부에서는 해상 항해의 위험성 및 재정상의 문제에 華夷의 구별이라는 명분론까지 뒤엎어서 福建에서 琉球使者에게 詔勅을 내리고 책봉하는 領封論과, 琉球에 武官 1명을 파견하여 책봉하는 頒封論이 논의되었는데, 琉球 쪽은 1601년에 종전대로 文官을 파견하도록 요청해서 萬曆帝의 재가를 얻었다. 이 領封論과 頒封論에 대해서는 金城正篤, 1998.10 《沖繩から中國をみる－歴史論集》(沖繩타임즈社) <第Ⅲ章 4 領封論・頒封論－冊封をめぐる議論> 272~280 ; 上原兼善, 2001.11 《幕藩制形成期の琉球支配》(吉川弘文館) <第二章 豊臣政權の朝鮮出兵と琉球國> 43~46 참조.

171) 岡野昌子, 전게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154

에게 제시할 것을 예상했던 3개조의 ‘朝鮮差軍將에게 說諭하는 大明·朝鮮과 日本 和平의 條目’을 보냈다. 제1조는 朝鮮의 王子 1명을 秀吉의 ‘大名’으로 등용하고 朝鮮의 4도를 준다, 제2조는 15개소의 일본쪽 城塞(이른바 ‘倭城’) 중에 10개소를 파괴한다, 제3조는 金印을 사용한 ‘勘合’을 부활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제3조에는 “大明皇帝, 朝鮮國과의 和平을 懇求하므로 이를 허락한다. 그러므로 예의를 갖추어 詔書を 내리고, 大明勅使가 日本으로 건너와야 한다”고 되어 있다. 日明 간에 講和의 성격 해석에 오해가 생긴 채로 日本에서는 明使를 맞이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⁷²⁾

예수회 年報에 따르면, 慶長 원년(宣祖 29) 8월 하순에 사카이(堺)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冊封使의 모습에 대하여 루이스·프로이스(Luis Frois)는

사절 일행은 8(9)월 20일에 오사카에서 9천(小) 걸음인 사카이에서 평탄하고 좋은 길을 따라 출발했는데, 그 길에는 사카이의 귀부인들이 길을 가는 사절 일행을 구경할 수 있도록 길 양쪽에 여러 층으로 된 관람석을 설치해 두도록 하였다. (中略) 이어서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正使의 수행원들이 두 줄로 열을 지어 행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의 전방에는 10本の 진홍색과 鮮黃色 깃발이 앞서 갔다. 이들 뒤쪽으로는 文字板 혹은 판자에 등근 글씨체로 (너를 일본국왕에 봉한다 라고) 크게 쓴 조항을 운반하고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¹⁷³⁾ 江戸時代의 朝鮮通信使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다. 이 “太閤이 중국 사절 일행을 알현했던 경위”의 앞부분에는 “京都에서 司祭 아무개가 太閤의 중국사절 일행 알현 모습을 보고했다”¹⁷⁴⁾고 하므로, 어떤 司祭의 보고서를 프로이스가 다시 정리한 다음에 로마로 보냈을 것이다. 이 책봉사 일행의 퍼레이드 모습에 주목했던 山室恭子씨는 “참으로 ‘明帝가 秀吉을 日本國王에 책봉한다는 취지를 크게 쓴 판자’를 높이 쳐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서술했다.¹⁷⁵⁾ 다만 라틴어 서간집이 텍스트인 이 보

172) 佐島顯子, 1994.5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 《年報朝鮮學》 제4호, 27~30 ; 中野等, 전게서 <IV 講和交渉の推移> 278~280

173) 松田毅一 監譯, 《十六・七世紀 イエズ會 日本報告集 第Ⅰ期 第2卷(1594年-1596年)》(同朋舎出版, 1987년 9월) <10 一五九六年(九月十八日付, 都發信)十二月二十八日付, 長崎發信, 루이스·프로이스의 年報補遺> (家入敏光譯) 316~318. 또 이 화평교섭을 예수회 선교사의 기록으로 보완하면서 再考했던 Arcadio Schwade S.J. <朝鮮の役における日明和平交渉について - 主として外國史料による> キリシタン文化研究會 編, 1966.3 《キリシタン研究》 제11집 (吉川弘文館) 321 참조.

174) 松田毅一 監譯, 전게서 <10 一五九六年(九月十八日付, 都發信)十二月二十八日付, 長崎發信, 루이스·프로이스의 年報補遺> 315~316

175) 山室恭子, 1992.11 《黄金太閤 - 夢を演じた天下人》(中央公論社) 155 ; 金文子, 2005.10 <이벤트로서의 朝鮮通信使 - 豊臣政權期에 과견된 통신사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제22집 (서울). 나중에 曹圭益 他編,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2(정치·선박·제도·종교·교육·식품·기

고서의 () 안은 譯者の 補足語 또는 注에 넣어야 할 短文¹⁷⁶⁾이므로, 과연 행렬 뒷부분의 文字板에 ‘封汝爲日本國王’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는지, 요컨대 이제부터 秀吉이 日本國王에 책봉된다는 것이 오사카의 군중들에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秀吉을 冊封하려는 상대한 儀仗과 樂隊에 둘러싸인 明使 일행이 오사카로 향했다는 것은 프로이스의 ‘證言’대로일 테지만, 아마도 秀吉은 여전히 책봉의 의미도 ‘勘合’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조 29년 9월 2일(일본력 9월 1일), 명의 일본국왕 책봉사 楊方후과 부사 沈惟敬은 大坂城에서 豊臣秀吉을 접견하고 萬曆帝가 보낸 일본국왕 책봉의 誥命·勅諭와 일본국왕의 金印 및 冠服을 하사했다. 이날의 책봉의례에 이어서 다음날 3일의 향연도 지체 없이 끝냈으나 秀吉이 제시했던 강화조건에 관한 회답은 없었고, 이에 일명 강화교섭은 파탄이 났다.¹⁷⁷⁾ 강화교섭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¹⁷⁸⁾ 있기는 하지만, 秀吉이 명의 책봉을 받은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당시 萬曆帝가 秀吉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했던 誥命과 책봉 이유를 기록한 勅諭는 大阪歴史博物館과 宮内廳 書陵部に 각기 현존하며, 京都의 妙法院에는 秀吉에게 하사했던 기린 문양의 常服(문무관이 조정에 입궐할 때의 평복)을 비롯하여 冠服 22점이 전한다.¹⁷⁹⁾

그러면 秀吉을 일본국왕에 임명하는 책봉의례는 어떻게 거행되었을까? 선조 29년 12월 상순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秀吉과 접견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귀국길에 올

예)》(學古房, 서울, 2008년 4월에 再錄) 64도 山室씨의 이 서술을 답습한다.

176) 松田毅一 監譯, 1987.7 《十六・七世紀イエズス會日本報告集 第Ⅰ期 第1卷(1588年-1592年)》(同朋舍出版) 凡例.

177) 石原道博, 전계 《文祿・慶長の役》 108~109 ; 中村榮孝, 전계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201~203 ; 李焜錫, 전계서 <第三篇 第十一章 第四節 交渉の終局> 500~504 ; 北島万次, 전계 《豊臣秀吉の朝鮮侵略》 179 ; 三鬼清一郎, 前掲 <關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 87 ; 鄭樑生 前掲書 <第五章 第六節 丁酉の役> 541~542

178) 예를 들면 명측 사료에 기초하여 강화교섭의 추이를 서술한 邊土名朝有씨는 조선의 大臣이 와서 賀禮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말단 관리 黃愼을 파견했던 것이 秀吉을 노하게 했다고 한다(同, 전계서 <第一部 第四章 明の冊封体制と文祿・慶長の役> 150~151). 한편 佐島顯子씨는 조선 측은 豊臣政權에 편입될 意志는 없었으며, 明 역시 秀吉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지 않았던 데서 강화파탄의 원인을 구하며(同, 전계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 36~37), 中野等씨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문제가 강화파탄의 주된 요인으로 본다(同, 전계서 <Ⅳ. 講和交渉の推移> 290~292).

179) 大庭脩, 1996.2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研究》(同朋舍出版) <第十三章 豊臣秀吉を日本國王に封ずる誥命> ; 中村榮孝, 1973.5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冊封に關する誥命・勅諭と金印について> 《日本歴史》 제300호, 116~119 ; 河上繁樹, 1998.3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冊封に關する冠服について - 妙法院伝來の明代官服> 《學叢(京都國立博物館)》 제20호

랐던 조선통신사 黃愼(敦寧府都正. 정3품 당상관)과 부사 朴弘長(掌樂院正, 나중에 上護軍. 정3품 堂上官) 일행¹⁸⁰⁾은 책봉사가 명나라 兵部에 상주했던 稟帖(하급 관리가 상급자 앞으로 보내는 문서) 2통과 秀吉의 謝恩表 1통(僞作)을 등사한 다음에 한성으로 보내고 있다.¹⁸¹⁾ 이 가운데 遊擊 沈惟敬이 兵部 앞으로 보낸 稟帖을 보도록 하자.

[沈遊擊兵部稟帖曰], 爲完報東封事, 閏八月十八日卑職(=沈惟敬)等, 奉到欽鋪龍節·璽書等件, 秀吉擇以九月初二日, 迎於大坂受封, 卑職先往教禮, 奉行惟謹, 至期, 迎請冊使, 直至中堂, 頒以誥印·冠帶服等項, 率衆行五拜三叩頭禮, 件件頭項, 習華音, 呼萬歲, 望闕謝恩, 一一如儀, 禮畢, 開宴使臣及隨行各官, 是晚, 秀吉親詣卑職寓所, 稱謝, 次早, 謁謝楊正使, 饋以衣刀·甲馬, 各馬官亦饋刀幣, 極言感戴天恩不盡, 再三慰勞, (中略) 萬曆二十四年十月日, (《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7일 기사조)

이 上奏文의 제목은 ‘東封을 完報’, 즉 豊臣秀吉의 일본국왕 책봉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 해 윤8월(일본력 8월) 18일에 책봉사 楊方亨과 沈惟敬 일행은 군사권을 천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표시인 龍節(용 장식이 들어간 旗印)과 璽書(詔勅)를 휴대하고 일본 사카이 항에 도착했다. 秀吉은 9월 2일 책봉사를 오사카성에서 맞이하고 ‘受封’, 즉 책봉을 받게 된다. 다만 의례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沈惟敬이 사전에 행례절차를 가르쳐 주었는데, 秀吉은 그저 지시하는 대로 공손히 따랐다고 한다. 중앙의 어전으로 안내 받은 책봉사는 誥命과 金印 외에 皮弁冠服(본래 朔望 視朝·四夷朝貢 때 입는 祭服의 일종)을 하사했다. 이 皮弁冠服은 琉球國王과 동등한 郡王(皇帝의 孫)의 반열이지만, 예전

180) 通信使 과견 전야의 使節의 명칭을 둘러싼 조선정부 내부의 논의 및 沈惟敬의 接判使였던 黃愼과 大丘府使 朴弘長에 대한 實職 敍授에 대해서는 三宅英利, 전게서 <第一篇 第二章 通信使의 初期形態> 134~136 ; 孫鍾聲, <강화회담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國史編纂委員會 編, 1995.11 《한국사 29(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同委員會, 果川) 105~107 ; 김대길, <병신년(丙申年, 1596) 통신사행(通信使行)에 관한 연구-황신(黃愼)의 《일본왕환일기(日本往還日記)》·박홍장(朴弘長)의 《동사록(東槎錄)》을 중심으로> 朴漢男 他, 2003.8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조선 시대 양반사회와 문화 2)》 (集文堂, 서울) 117~122 참조.

181) “敦寧都正黃愼·上護軍朴弘長等, 將冊使等兵部稟帖三道·秀吉謝表, 膾書上送”(《宣祖實錄》 권 83, 29년 12월 7일 기사조). “日本國王臣豊臣秀吉, 誠惶誠恐, 稽首稽首”라는 글로 시작하는 秀吉의 謝恩表(同書 同條 수록)는 일찍이 源道義(義滿)가 成祖 永樂帝에게 보낸 表文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石原道博씨는 이것을 沈惟敬에 의한 위작일 것으로 판단하였다(同, 전게 《文祿·慶長の 役》 114~115, 211). 《日本往還日記》 萬曆 丙申 9월 초8일 辛丑條에는 “(前略)楊天使曰, 徐休說, 天朝事已完, 我已頒敕賜印, 而謝恩表文, 至今討未得, (後略)” 라고 했다. 黃愼의 《日本往還日記》는 中村榮孝 解題, 1933.8 <萬曆丙申秋冬通信使一行日本往還日記> 《靑丘學叢》 第11号 (京城, 國書刊行會, 1971년 4월 復刻)를 이용했다.

의 室町將軍이 朝鮮國王과 동등하게 親王(皇子) 반열의 九章冕服을 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秀吉은 명백히 격하된 취급을 받았다.¹⁸²⁾ 秀吉은 여러 다이묘를 거느리고 五拜三叩頭의 예를 올렸으며, 의례의 순서대로 중국어로 ‘만세’를 부르고 ‘望闕’하여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이리하여 豊臣秀吉을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는 의례는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고, 책봉사와 수행원을 연회장으로 초대하였다. 조선국왕이 明使를 위하여 행하는 翌日宴에 상당하는 접대 의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선조 29년 12월의 실록 기사는 沈惟敬의 稟帖에 이어 정사 楊方亨이 병부 앞으로 보낸 揭帖(하급기관이 上級機關에 제출한 문서의 일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9월 2일 당일에 역시 秀吉이 “궁궐을 바라보며 五拜三叩頭의 예를 행하다”라고 기록했다.¹⁸³⁾

한편, 9월 2일 당일에 조선통신사 黃愼 일행은 秀吉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책봉의례 ‘자리’에 동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黃愼의 일본기행 《日本往還日記》에 따르면 關白 秀吉이 책봉을 받았고, 또한 萬曆帝의 ‘陪臣’이 된 德川家康 이하 40명의 다이묘들에게 明의 冠服과 職帖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黃愼은 그 다음날인 3일에 전해 들었다.¹⁸⁴⁾ 또 黃愼은 “천조는 이미 사절을 보내 책봉하였다. 나는 잠시 이를 참았다”는 秀吉의 말을 《日本往還日記》에 적었다.¹⁸⁵⁾ 어찌됐든 秀吉이 책봉을 수락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일본국왕 책봉사 楊方亨은 이번 임무를 명 정부에 어떻게 보고했던 것일까? 秀吉이 책봉을 수락했다는 정보는 이 해 11월 중순, 이어서 12월 하순에 명 정부에 도착했다.¹⁸⁶⁾ 그런데 그 사이에 조선 국왕의 咨文을 통해서 加藤清正이 이번 겨울에

182) 豊見山和行, 前掲書 < I 第1章 明朝册封關係からみた琉球王權と身分制 > 34~38

183) “〔天使兵部揭帖曰〕, 册封日本正使等官五軍營等揭衙門署都督僉事楊(=楊方亨)等, 爲完報東封事, (中略)倭將行長馳報秀吉, 擇於九月初二日, 奉迎册命於大坂地方受封, 職等初一日, 持節前往, 是日即抵大坂, 次日, 領受欽賜圭(=玉製の 笏)·印·官服, 旋即佩執頂被, 望闕行五拜三叩頭禮, 承奉誥命受封訖, 嗣至職等寓所, 再申感激天恩, 及慰勞職等涉歷勞頓等語, (中略) 萬曆二十四年九月初五日” (《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7일 기사조).

184) “聞關伯已爲受封, 諸倭將四十人, 具冠帶受官云, (後略)” (《日本往還日記》 萬曆 병신 9월 3일 병신조)

185) “(前略) 關伯大怒曰, 天朝則既已遣使册封, 我姑忍耐, 而朝鮮則無禮至此, 今不可許和, (後略)” (《日本往還日記》 萬曆 병신 9월 6일 기해조); 김대길, 전개 <병신년(丙申年, 1596) 통신사행(通信使行)에 관한 연구> 131; 中野等, 전개서 <IV. 講和交渉の推移> 290

186) “兵部題, 董一元報, 關白已于九月初一日受封, 初九日, 册使回, 已到南戈崖(=名護屋), 報聞”, “册封日本正使楊方亨題, 關白于九月初二日受封, 報聞” (차례로 《明神宗實錄》 권304, 萬曆 24년 11월 12일 갑진조, 同書 권305, 萬曆 24년 12월 29일 신묘조).

다시 조선으로 출병할지 모른다는 정보도 입수하였다.¹⁸⁷⁾ 그래서 이번에는 이듬해 萬曆 25년(선조 30) 3월에 북경으로 돌아온 책봉사 楊方亨의 復命報告를 보도록 하자.¹⁸⁸⁾

冊封日本正使楊方亨回京上疏, 直言封事顛末, 正欺罔以絕禍源, (中略) 閏八月十五日, 欽補諸物甫至, 行長馳奏秀吉, 卽擇九月初二日, 于大坂受封, 惟敬先去教禮, 封時, 委行五拜三叩頭禮, 呼萬歲, 次日, 至臣寓, 稱說感戴天恩, (後略) (《明神宗實錄》 권308, 萬曆 25년 3월 己酉 19일 기유조)

楊方亨의 보고에 의하면, 책봉을 받을 때 秀吉은 沈惟敬이 가르친 대로 五拜三叩頭의 예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앞에서 보았던 沈惟敬의 稟帖 및 楊方亨의 揭帖을 아울러서 생각하면, 책봉의례의 행례 절차 중에 秀吉이 ‘望闕’했다는 것도 반드시 허위 보고는 아닐 것이다. 약간의 윤색은 있다 해도 이러한 의례적 절차는 四夷의 封王을 은혜적 배후로 보는 명측의 논리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책봉사로 파견된 楊方亨 역시 은혜를 배후 입장에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뒷날 청의 谷應泰(1620~1690)가 찬술한 《明史紀事本末》에 “平秀吉은 3일간 목욕재계하고 사절을 맞이했으며, 책봉을 받을 때는 五拜三叩頭와 山呼(=만세를 부르는 일)의 예를 행했다”¹⁸⁹⁾고 되어 있는 것은 楊方亨의 復命報告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일명 간의 화의 파탄으로 총책임자 兵部尙書 石星은 실각하여 사형에 처해졌고, 楊方亨도 해임처분을 받았다.

2. 景轍 玄蘇와 루이스·프로이스의 ‘증언’

조선통신사 黃愼 일행이 오사카성의 책봉의례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187) “葡遼總督孫鑣奏, 朝鮮國王咨文稱, 闕白因朝鮮不遣王子致謝, 復欲興兵, 清正等今冬過海, 大兵明年調進, 乞要先調浙兵, 駐筭要害, 以爲聲援, 章下兵部” (《明神宗實錄》 권305, 萬曆 24년 12월 4일 병인조).

188) 楊方亨의 復命報告는 邊土名朝有, 전게서 <第一部 第四章 明의冊封体制と文祿·慶長の役> pp.152-153에 전문이 소개되었다.

189) “楊方亨·沈惟敬奉冊如日本, 平秀吉齋沐浴三日, 迎郊節使, 受封, 五拜三叩頭·山呼禮, 禮畢, 款使者至備, (後略)” (《明史紀事本末》 [전게 《文淵閣四庫全書》 제364책, 수록] 권62, 援朝鮮, 神宗萬曆 24년 9월조). 다만 石原道博씨는 ‘지나친 각색일 것’이라고 판단한다(同, 전게 《文祿·慶長の役》 109).

을 상기하기 바란다. 통신사 일행은 宣祖의 國書조차 건네지 못한 채 책봉사와 함께 宣祖 29년 9월 9일 오후에 사카이 항에서 승선하여 다음날 釜山으로 출발하였다.¹⁹⁰⁾ 사실 黃愼은 귀국에 앞서 군관 趙德秀에게 밀서를 주어 조선으로 보냈으며, 趙德秀는 11월에 어전에서 조선통신사 “일행이 모두 명나라 사신의 행동과 秀吉을 책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¹⁹¹⁾ 黃愼은 군관과 역관을 책봉의례가 거행되는 곳으로 보내 입회시키고 싶다고 명 사신에게 요청했지만, 명 사신이 그럴 필요는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물론 이때 “적의 정세가 급변했다”는 밀서를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명에 奏聞使를 보내 사정을 급보하도록 비변사가 요청했고, 선조의 재가를 얻었다.¹⁹²⁾ 1개월 뒤인 12월 하순에 선조는 겨우 한성으로 돌아온 黃愼을 別殿에서 인견하고, 왕명을 받들고 이역땅 일본을 다녀온 노고를 위로했다. 당시의 모습을 실록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申時, 上御別殿, 引見黃愼, 上曰, 爾以國事往來異域, 多苦勞, 愼曰, 奉使無狀, 不能傳命, 臣罪當萬死, 上曰, 此非奉使之罪, 勿爲未安, 且其處賊情何如, 愼曰, (中略)因令明日, 獨接天使, 翌日兩天使行封, 關白立於庭上, 五拜三叩頭, 敬受賜衣, 其臣四十餘人皆受欽賜有差云, 臣以關白禁不入參, 故不得親見, 其間曲折未能詳知, 而因人傳聞亦難盡信, 上曰, 關白行禮, 何以爲之云乎, 愼曰, 以倭服受勅, 而拜禮則或云爲之, 或云不爲矣, (後略) (《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21일 계미조)

黃愼은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다 하지 못한 일을 사죄하였다. 그러나 선조로서는 일본의 정세, 특히 秀吉이 과연 명의 책봉을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黃愼의 회답은 沈惟敬과 楊方亨이 兵部에 보고했던 내용과 거의 같았다. 요컨대 9월 2일에 關白 秀吉은 책봉사 앞에서 공손하게 五拜三叩頭의 예를 올린 후 冠服을 받았으며, 40여 명의 다이묘들도 각기 위계에 따라 관복

190) 《日本往還日記》 萬曆 병신 9월 9일·10일조.

191) “巴初, 上引見黃愼軍官趙德秀·朴挺豪等于別殿, 上曰, 賊中所聞如何, 盡言之, 德秀曰, (中略)九月初一日, 副使先往五沙蓋(=大坂), 關白不見, 上使午後始至, 期初二日相見封受云, 黃愼稟於天使衙門, 請差軍官·譯官跟往受封之處, 以觀形勢云, 天使曰, 不必帶去云, 故一行之人, 皆未見天使舉動及關白受封節目, 上曰, 然則已行封王禮乎, 德秀曰, 臣不得目覩, 只所聞如此耳, (後略)” (《宣祖實錄》 권82, 29년 11월 6일 무술조). 趙德秀의 경력은 확실하지 않으며, 나중에 慶山縣令(중5품)이 된 朴挺豪도 직무대만으로 파직되었다는 사실이 전할 뿐이다.(同書 권113, 32년 5월 6일 계축조).

192) “備邊司啓曰, 黃愼狀啓已到, 賊情已變, 事勢至此, 唯當速具事情, 告急於天朝, 請出奏聞使, 令承政院文書磨練, (中略)傳曰, 依啓” (《宣祖實錄》 권82, 29년 11월 6일 무술조). 中村榮孝, 전게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219

을 받았다는 것을 傳聞 형태로 보고하였다. 확실히 秀吉이 五拜三叩頭の 禮를 올렸다는 것은 沈惟敬과 楊方亨도 보고를 끝냈다. 다만 그 ‘자리’가 다다미를 칸 넓은 방이 아니라 ‘庭上’이라고 했던 것은 黃愼이 조선 왕궁의 ‘殿庭’ ‘闕庭’을 상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선조가 秀吉의 행례 모습을 구체적으로 묻자 오사카성에서 접견을 허락받지 못했던 黃愼은 “倭服을 입고 칙서를 받았는데, 拜禮했다고도 하고 拜禮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黃愼은 현장에 없었다.

黃愼의 復命報告는 앞에서 본 楊方亨·沈惟敬의 報告와 비교하면 약간 애매한 점이 남는다. 이와 같은 사료상의 제약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中村榮孝씨는

이 당시의 사정은 일본의 문헌류에 아주 자세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도 있지만 강화교섭의 진상을 알기 어려운데다가, 근세 이래 일본국왕 책봉 등에 관해서 왜곡된 이해가 더해져 왔다.

고 주의를 환기시켰다.¹⁹³⁾ 예를 들면 秀吉이 日本國王에 책봉된 것을 알자마자 격노하며 冕服을 벗어던지고 誥命을 부셨다는 賴山陽의 《日本外史》(1827년)는 전형적인 근세 이래의 오해일 것이다.¹⁹⁴⁾ 원래 오사카성에서 있었던 秀吉의 책봉의례를 전하는 동시대의 일본쪽 사료가 적는데, 예를 들면 미부 다카스케(壬生孝亮, 1575 - 1652)의 일기 《孝亮宿禰記》(《左大史孝亮記》)에서는 秀吉이 ‘唐人’(明使)과 대면하고, 緞子·冠服 등 많은 進上品이 있었다는 풍문을 전하는데 불과하다.¹⁹⁵⁾

秀吉의 책봉의례를 전하는 일본쪽 사료로서 필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景輒 玄蘇의 遺稿集 《仙巢稿》(慶安 3년, 1650 간행, 國立國會圖書館 鶯軒文庫 소장)에 수록된 柳川調信의 肖像贊¹⁹⁶⁾을 주목하고 싶다.

193) 中村榮孝, 전게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202. 中村씨는 別稿에서 “이 중요한 외교상의 의례가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는 일본의 기록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同, 전게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册封に關する誥命·勅諭と金印について> 114.

194) 中村榮孝, 전게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册封に關する誥命·勅諭と金印について> 115~116 ; 石原道博, 전게 《文祿·慶長の役》 111~112 ; 李燦錫, 1977.3 《壬辰戰亂史－文祿·慶長の役(下卷)》(東洋圖書出版) <第五篇 第十八章 第二節 本戰役の特徴> 329~331.

195) “文祿五年九月四日, 去朔日於大坂城, 太閤有御對面唐人, 唐人鈍子千端, 唐冠六十頭, 進上之由, 風聞”(《左大史孝亮記》 [《改定史籍集覽》 第25册, 近藤活版所, 1902年6月, 所收]); 中村榮孝, 前掲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册封に關する誥命·勅諭と金印について> 114 ; 河上繁樹, 전게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册封に關する冠服について> 88

196) 국립국회도서관은 이 木版本 3册 외에 寫本 《仙巢稿》3册도 架藏하고 있는데, 양자를 열람한 결과 인용한 부분에 문자의 차이는 없었다. 이 肖像贊은 1605년에 죽은 柳川調信(傑峯宗英居士)을 위하여 기록한 草案 또는 案文(最終稿)이며, 流芳院은 그의 菩提寺이다. 荒木和憲 <16世紀末

(前略) 天將重奏天朝, 俾太閤封日本國王, 翌年甲午(=文祿3年), 差楊·沈二老爺, 爲册封之使, 太閤喜氣溢眉, 領金印著衣冠, 唱萬歲者三次, (中略) 慶長十年龍集乙巳蜡月之尾, (《仙巢稿》卷下, 讚類, 碑銘并像贊, 流芳院殿傑岑宗英居士肖像贊并序)

慶長 10년(1605) 12월 말일자의 이 사료에 따르면, 文祿 3년(宣祖 27)의 시점에서 명에서는 秀吉의 책봉이 결정된 후 책봉사로서 楊方亨과 沈惟敬 일행이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景輒 玄蘇의 회상에 의하면, 太閤 秀吉은 기쁨에 들떠서 金印을 拜領하고 冠服을 몸에 걸쳤다. 그리고 ‘만세’를 삼창했다고 한다. 景輒 玄蘇는 柳川調信과 함께 임진왜란 직전부터 전쟁 회피 대책과 그 후의 日明 강화교섭에 분주했던 禪僧이며, 誥命의 내용도 이미 釜山の 일본 陣營에서 譯讀하고 있었다.¹⁹⁷⁾ 당시 몇 안 되는 ‘證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9월 2일의 책봉의례 모습을 예수회 年報에서는 앞의 “太閤이 중국사절 일행을 알현했던 경위”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 국왕의 親書에는 “다시 조선을 침범하지 말라”(不得再犯朝鮮)는 문구가 있었다. 요컨대 앞으로는 高麗를 침공하면 안 된다. 만일 다시 침공한다면 이제 너에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威光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인(諸臣)은 마치 중국의 封建家臣과 같은 신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謁見)은 일본식 의례이며, 즉 다다미방에 앉아서 진행되었다. 개회 중에 太閤과 正使(楊方亨)는 대등했다. 출석자는 (德川)家康, (前田)筑前(利家), (上杉)越後(景勝), (宇喜多)中納言(秀家), (小早川)金吾(秀秋)殿, 毛利(輝元)였는데, 그들은 일본 전토에서 최대의 國主들이었다. 蓋(사카즈키), 즉 술을 조금씩 나누어 마신 후 太閤은 천천히 榮譽로운 書冊, 즉 커다란 黃金 書板(金印)을 받아서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그때 冠冕도 수령했으므로, 그것들을 착용하기 위하여 別室로 물러났다. 중국인들은 別室에서 나온 (太閤)을 비상한 榮譽와 존경심으로 우러러보았으며, 그리고나서 즉시 향응을 위한 음식들을 크고 높은 상에 차려서 날라왔다. 참으로 성대한 연회와 비상한 趣好로 가득한 儀式이었으므로 많은 (使節들)은 식사보다는 구경하기에 바쁠 정도였다. 연회가 끝나자 각자 자기 저택으로 돌아갔다. 해가 지자 새로운 국왕 太閤은 遊擊(沈惟敬)을 방문하러 나갔고, 正使(楊方亨)도 역시 크게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 太閤은 그들을 매우 친절하게 접대했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용이 조금 길었지만 1596년 9월 18일자 오사카 발신의 이 書信은 明·朝鮮·日本 3국 이외의 중립적 입장에서 적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¹⁹⁸⁾ 당일 秀吉이 誥命의 내용을 즉

期對馬宗氏領國における柳川氏の台頭> (九州史學研究會編, 전계 《境界からみた内と外》 所收) 172.

《仙巢稿》의 소재에 대하여는 伊藤幸司씨의 教示를 받았음을 여기에 附記하여 감사를 표한다.

197) 中村榮孝, 전계서 <二 豊臣秀吉の外征> 199

시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金印과 冠冕을 拜領한 ‘新國王’ 秀吉이 楊方亨과 沈惟敬의 거처로 가서 직접 謝意를 표한 부분은 朝鮮·明의 實錄記事와 모두 부합한다. 日明 간의 책봉의례 자체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프로이스의 ‘證言’은 사카이에서 오사카까지의 성대한 儀仗, 이어서 매우 호화로운 책봉의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봉을 기뻐하는 秀吉의 태도를 후세에 잘 전하고 있다. 秀吉은 이 책봉의례로 萬曆帝의 신하가, 德川家康 이하 諸大名은 陪臣이 된다는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책봉체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秀吉은 宣祖 29년 9월에 확실히 萬曆帝의 책봉을 수락했다. 그런데 원래 明이 秀吉의 冊封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은 ①조선에서 일본군의 전면 철수, ②책봉 외에 朝貢을 요구하지 않을 것, ③다시 조선에 침공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였으며, 이들 조건은 ‘皇帝敕諭日本國王平秀吉’로 시작하는 秀吉에게 보낸 勅諭에도 明記되어 있다.¹⁹⁹⁾ 이 중에서 ②의 朝貢=‘勘合’의 부활 요구는 화의 추진과에 의한 日明 강화교섭 과정에서 떠오른 조건이었다. 그러나 秀吉이 ‘日本國王’에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요한 조공 무역은 불가능해졌다. 일본의 요구는 책봉이 아니라 영토의 요구와 조공무역에 있다는 明 정부의 경계심은 이미 책봉사 李宗城의 도망 직후부터 있었으며, 또한 책봉 여하와 상관없이 일본은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²⁰⁰⁾ 秀吉은 이 무렵에 와서야 겨우 이번 책봉의 진의를 눈치 챌던 것이 아닐까? 秀吉에게 있어서 ‘日本國王’의 책봉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었으며, 秀吉이 東夷의 ‘蕃王’으로서 中華帝國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일은 끝내 없었다.

198) 松田毅一 監譯, 전게서 <10 一五九六年(九月十八日付, 都發信)十二月二十八日付, 長崎發信, ルイス・フロイス의年報補遺> 319~320. 이 일본식 謁見儀禮의 모습은 간략하지만 Arcadio Schwade S.J., 前掲 <朝鮮の役ににおける日明和平交渉について> 321~322에 소개되었다.

199) 三木聰, 전게 <萬曆封倭考(一)> 47~48 및 同 <萬曆封倭考(二)> 5. 三木聰씨가 지적했던 것처럼 秀吉 앞으로 보낸 勅諭에는 ‘原約三事’로서 “自今釜山倭衆, 盡數退回, 不敢復留一人, 既封之後, 不敢別求貢市, 以啓事端, 不敢再犯朝鮮, 以失鄰好”라고 한다. (同, 전게 <萬曆封倭考(一)> p.94의 註(18). 大庭脩, 전게서 <第十三章 豊臣秀吉を日本國王に封ずる詔命> 245). 또 책봉책의 모순은 佐島顯子, 전게 <日明講和交渉における朝鮮撤退問題> 109~110에 지적이 있다.

200) 小野和子, 전게서 <第二章 第二節 日明和平交渉をめぐる政争> 129~130 ; 邊土名朝有, 전게서 <第一部 第四章 明の冊封體制と文祿・慶長の役> 140~147 ; 三木聰, 전게 <萬曆封倭考(二)> 15~16

맺음말

본고에서는 먼저 전반부에서 조선 전기(15·16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환경에 있어서 명을 주축으로 조선·琉球·일본과의 책봉관계 및 의례적 관계를 조망하였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조선 宣祖代에 있어서 책봉의례와 對明 외교의례(望闕禮)의 실시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日本國王’ 豊臣秀吉의 책봉의례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더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太祖 洪武帝는 즉위 후 즉시 주변 諸國에 使者를 파견하여 朝貢을 독촉함과 아울러서 ‘蕃國朝貢儀’ 외에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를 정했다. 조선왕조에서는 3대 국왕 太宗이 建文帝의 뒤를 이어 永樂帝의 책봉을 수락했고, 太宗 3년(1403)에 ‘朝鮮國王’으로 승인을 받았다. 책봉체제에 편입된 조선은 이후 매년 正朝·聖節·千秋節에 조공사절을 파견하고, 中宗 26년(1531) 이후에는 正朝使를 冬至使로 바꾸어 聖節使·千秋使·冬至使를 파견하는 1년 3貢의 외교체제로 이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4대 명절에 조선의 왕궁에서는 對明 遙拜儀禮가 거행되었다. 조선국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王都 漢城의 왕궁에서 明의 황제를 遙拜하는 궁중의례이다. 조선국왕이 직접 紫禁城에 參內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望闕禮를 거행하는 것으로 明 황제와의 군신관계를 확인했던 것이다.

琉球의 경우, 洪武 5년(1372)에 中山王 察度가 일찍부터 入貢 권고에 응하여 제2대 武寧이 永樂 2년(1404)에 처음으로 ‘琉球國王’으로 책봉을 받았다. 처음에는 “大琉球國의 朝貢은 不時로 한다”고 하여 통교 제한이 없었지만, 成化 11년(1475)에 琉球使臣의 살인 사건을 이유로 貢期를 2년 1貢으로 제한했고, 그 후 奏請을 거듭하여 正德 2년(1507)에 1년 1貢의 貢期를 얻었는데, 嘉靖 원년(1522)에 다시 2년 1貢을 하명받았다. 琉球에서 對明 遙拜儀禮를 거행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사료의 제약이 크기는 하지만, 琉球國王이 首里城에서 ‘望闕의 禮’를 행하고, 百官도 정렬하여 拜禮했다는 기록이 16세기 중반의 《朝鮮王朝實錄》에 남아 있다. 또한 琉球의 외교문서집 《歷代實案》에 수록된 15세기 전반의 咨文에 따르면, 聖節·正朝 등 名節에 尙巴志는 洪武帝에게서 頒賜된 冠服을 입고 宮中儀禮를 거행했었다. 18세기 전반에 성립한 《琉球國由來記》와 《琉球國舊記》가 시사하듯이 薩摩藩 지배하의 근세 琉球에서도 冬至·元旦·正月 15일의 王府儀禮는 3대 儀禮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었다. 어느 것이나 단편적인 사료이지만, 琉球國王은 일찍이 洪武帝가 제정했던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즉 望闕禮를 琉球 나름대로 재해

석한 뒤에 시행했던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建文 4년(1402)에 足利義滿이 京都에서 明使를 영접하고 建文帝의 책봉을 수락하였다. 永樂 원년(1403) 義滿은 遣明使에게 ‘日本國王臣源’ 명의의 외교문서를 가지고 入明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永樂 2년에 義滿은 다시 ‘日本國王’에 책봉되었다. 京都에서 거행된 冊封儀禮 때 義滿은 세 번 절한 뒤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詔書를 받았다고 하는데, 室町殿가 明 황제와의 종속관계를 시사하는 명절의 遙拜儀禮를 시행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15세기 초에 朝鮮·琉球·日本の ‘國王’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하였다. 다만 일본국왕의 貢期는 10年 1貢이었으며,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통교 제한이 가장 엄격했다. 일본에게는 의무였던 勘合 지참도 조선과 琉球는 면제되었다. 게다가 15세기 후반 이후는 明使의 來日도 끊어지고, ‘勘合貿易’이라는 이름의 朝貢貿易도 16세기 후반에는 단절되었다.

그러면, ‘唐入’(=명나라 정복계획)을 단행했던 豊臣秀吉은 중화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 시스템(실대는 무역 시스템) 속으로 포섭되어, 神宗 萬曆帝의 신하로서 의례적 관계를 구축할 의지는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먼저 전형적(내지 모범적)인 ‘蕃王’의 사례로서 秀吉과 거의 동시대에 한반도를 다스렸던 宣祖의 행동양식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宣祖대의 책봉의례, 그리고 望闕禮라는 對明외교의례의 ‘場’을 통하여 1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朝中關係의 실상을 명확히 하였다.

宣祖 원년(1568) 2월에 宣祖는 穆宗 隆慶帝로부터 ‘朝鮮國王’에 책봉하는 誥命과 金印·冕服을 받고, 明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체제에 정식으로 참가하였다. 《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책봉의례의 ‘場’에서 宣祖는 宗親·문무백관과 함께 ‘萬歲’를 삼창했을 것이다. 明使가 한성에서 머문 기간은 불과 1주일 남짓했지만, 宣祖는 《經國大典》의 규정대로 下馬宴 → 翌日宴 → 上馬宴 순서로 접대의례를 베풀었고, 3월 하순에 謝恩使를 파견함으로써 책봉의례는 완료되었다.

宣祖대의 對明 遙拜儀禮에 관해서는 편의상 임진왜란 이전, 전란기, 임진왜란 이후의 3기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하였다. 먼저 宣祖가 望闕禮를 처음 거행한 것은 宣祖 5년 11월 冬至이다. 宣祖는 역시 《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群臣을 거느리고 大明皇帝를 위하여 冬至를 축하했으며, 이어서 群臣은 宣祖를 위하여 朝賀禮를 거행하여 군신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萬曆帝의 등극을 전달하는 明使를 영접하고 있으며, 또한 宗系辨誣問題가 미해결이었으므로 明使의 접대에는 세심한 주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다만 그 후에는 氣象光學的 日變이나 日食 등의 天譴思想, 極寒·降雨 등의 기후조건 외에 先

代 王妃의 死去에 수반하여 正朝·冬至의 궁중의례는 차츰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仁順王后(明宗妃)의 忌辰이 정월 2일이었기 때문에 正朝의 궁중의례 거행에 지장이 생겼지만, ‘上國의 禮’인 望闕禮는 종전처럼 正朝에 실시하고, 조선 국내의 군신관계를 확인하는 朝賀禮는 정월 3일로 연기함으로써 對明 遙拜儀禮를 우선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기의 경우 宣祖는 正朝·冬至 그리고 聖節의 望闕禮를 거의 매년처럼 충실하게 거행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宣祖 26년 5월 2일 피난처였던 평안도 永柔縣의 淸溪館에서 望闕禮를 실시했던 일이다. 그 목적은 王都 한성의 탈환이라는 ‘皇恩’(皇帝의 恩義)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당일은 문무백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참가시켰으며, 조선의 예법에 없는 이례적인 왕조국가의 의례이다. 다만 왕릉도굴사건을 이유로 望闕禮의 정지를 요청하는 宗室을 배려하여 朝賀禮의 실시는 보류하였다. 望闕禮는 ‘皇上을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王都 탈환은 宗廟·社稷의 경사였다. 그 후 宣祖는 한성 貞陵洞의 行宮에서 지냈으며, 南別宮이 종종 望闕禮의 會場으로 사용되었다. 宣祖 28년 8월의 聖節에 宣祖는 그 南別宮에서 일본국왕 책봉사 李宗城(나중에 歸國 도망)과 함께 望闕禮를 올렸다. 南別宮은 明軍 총지휘관의 주둔지이기도 하며, 明 더 나아가서 ‘皇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大明皇帝의 권위의 상징인 ‘闕牌’도 南別宮에 보관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전란으로 인하여 왕궁의 正殿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宮中儀禮를 거행할 때도 곤란한 일이 따랐지만, 日明 강화교섭의 결렬(宣祖 29년 9월) 뒤에도 한성에서는 명절 때마다 望闕禮가 엄숙하게 실시되었다.

왜란 종식기에도 正朝·冬至의 望闕禮는 충실하게 거행되었으며, 기록 형태는 간략하지만 오히려 明에 대한 恩義가 증폭되어 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소위 ‘丁應泰 誣奏事件’이 있고나서 李廷龜가 宣祖 31년 10월에 제출했던 외교문서이다. 거기에는 (1)《大明律》의 운용, (2)《大統曆》의 채용, (3)迎詔儀, (4)拜表儀의 제도화에 더하여 (5)正朝·冬至·聖節의 望闕禮 실시, (6)조선사회에 있어서 明의 연호 사용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조선과 明의 국제관계가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宣祖가 迎詔·拜表儀와 望闕禮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한 것은 李山海가 쓴 《宣宗大王穆陵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宣祖는 가장 먼저 皇帝의 恩義, 두 번째도 皇帝의 恩義라고 하며 언제나 신하에게 이야기하였다. 조선국왕의 ‘再造之恩’(國家再造의 恩義)은 이윽고 明清 교체 후에 조선 소중화의식으로 고양되며, 18세기가 되면 왕궁 昌德宮의 후원에 洪武帝·萬曆帝·崇禎帝를 제사지내는 大報壇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 백관이 착용하는 禮服의 불비 때문에 朝賀禮 실시가 정체되었

지만 望闕禮는 거의 충실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宣祖 39년 4월에는 千秋使와 聖節使를 파견함에 즈음하여 宣祖는 望闕禮를 올렸다. 조선의 禮와 法에서 조선국왕이 望闕禮를 지낼 때는 正朝·冬至·聖節과 千秋節이며, 조공사절을 파견할 때 望闕禮를 거행하는 일은 없다. 조선국왕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양식이다. 이 해는 宣祖 즉위 40주년에 해당하는데, 조선에서는 嫡子인 永昌大君이 탄생하고 明에서도 皇太孫이 태어나는 등 조선 국내외에서 경사가 뒤를 이었다. 그 한편에서 明은 서자 光海君을 아직도 왕세자로 책봉하지 않았으며, 대명관계가 반드시 원활한 것은 아니었지만 宣祖의 ‘皇恩’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成宗이 “내가 望闕禮를 올릴 때 몸은 여기 조선에 있지만, 몸소 황제를 拜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한 말이다. 望闕禮란 조선국왕이 직접 紫禁城의 皇帝 앞에 拜謁하는 것과 동등한 對明 외교의례이며, 조선 국내에서는 이것을 정치권력으로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儀禮는 정치와 외교를 가시화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豊臣秀吉은 明과의 외교의례의 ‘場’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던 것일까? 유일한 사례가 宣祖 29년 9월 2일(일본력 1일) 오사카성에서 거행된 책봉의례이다. 일본국왕 책봉사 楊方亨과 부사 沈惟敬이 誥命·金印·冠服을 進모하자 秀吉은 諸大名을 거느리고 五拜三叩頭의 禮를 올렸고, 儀禮의 순서에 따라 중국어로 ‘만세’를 외쳤으며, ‘望闕’하고 謝恩했다. 의례의 手順은 번잡했기 때문에 沈惟敬이 사전에 行禮手順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豊臣秀吉을 일본국왕에 책봉하는 의례는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고, 그 뒤에는 책봉사를 접대하는 향연이 열렸다. 한편, 책봉사와 동행하였던 조선통신사 黃愼 일행은 秀吉의 알현을 거부당하고 冊封儀禮의 ‘場’에 입회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秀吉의 冊封 수락을 전해 들었다. 黃愼의 復命報告에 따르면, 秀吉은 책봉사 앞에서 공손하게 五拜三叩頭의 禮를 올리고 冠服을 받았으며, 또한 諸大名 40여 명도 각각 위계에 상응하는 官服을 받았다고 한다.

萬曆帝가 豊臣秀吉을 일본국왕에 봉했던 誥命과 책봉 이유를 기록한 勅諭는 오사카역 사박물관과 宮內廳 書陵部에 각기 현존하며, 京都의 妙法院에는 秀吉에게 頒賜했던 常服을 비롯해서 冠服 22점이 전래한다. 이 같은 물적 증거와 明·朝鮮의 實錄記事, 景輶 玄蘇의 遺稿集 《仙巢稿》, 그리고 루이스·프로이스의 예수회 報告書 등으로 판단하건데, 秀吉이 공손하게 明帝의 책봉을 수락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秀吉이 제시했던 강화조건에 대한 회답은 없었고 日明 강화교섭은 파탄이 났다. 원래 朝貢의 전제로서 책봉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秀吉은 ‘日本國王’에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무역은 허가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제2차 조선침공이 시작되고, 秀吉이 東夷

의 ‘蕃王’으로서 中華帝國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 시스템에 편입되는 일은 끝내 없었던 것이다.

〈표 1〉 明代 東南 諸國의 貢期

國 名	貢 期
朝 鮮	1年 3貢
日 本	10年 1貢
琉 球	隨時 → 2年 1貢 (一時、1年1貢)
安南(베트남 북부)	3年 1貢
眞臘(캄보디아)	不定期
暹羅(타이의 아유타야)	3年 1貢
占城(베트남 남부)	3年 1貢
爪哇(자바 북부)	3年 1貢

* 《萬曆大明會典》 卷105, 禮部63 朝貢1 東南夷上을 참고로 鄭樸生, 《明·日關係史の研究》 66의 표 <諸國に對する貢期の規定>을 일부 수정함.

<표 2> 宣祖代の 望闕禮 실시 상황

	年 月 日	望闕禮	朝賀禮	특기사항
1	5·11·7	○	○	冬至. 명 사신 韓世能·陳三謨, 來朝
2	6·正·1	○		사흘 전에 望闕禮 習儀 기록 있음
3	6·11·19		문안	2품 이상은 四殿에 문안
4	7·正·1	정지		전년 말에 기상광학적인 日變을 관측
5	7·11·30	정지	權停禮	기후극한. 백관은 동지 문안만
6	8·正·1	정지	문안	玉堂은 四殿에 문안
7	9·正·1	정지		전년 정월 2일, 仁順王后(明宗妃)사망
8	10·正·1	정지		익일, 魂殿에서 大祥祭
9	11·正·1	정지		작년 11월 하순, 仁聖王后(仁宗妃)사망(3년상). 단 이 해 正朝 기록 없음
10	14·正·1	權停禮	權停禮	朝賀禮는 3일에 順延하여 恒式이 됨
11	17·正·1	정지	權停禮	闕庭 습기. 朝賀禮는 3일
12	20·8·17	○	-	聖節(萬曆帝)
13	20·11·23		權停禮	
14	21·正·1	○		朝賀禮는 3일
15	22·正·1	정지		日食
16	24·正·1	문안		議政府·六曹동서반 2품이신·政院·玉堂, 문안
17	25·11·24			全羅道觀察使 權慄, 冬至慰箋을 封進
18	26·正·1	정지	정지	선조는 義州에 체제
19	26·5·2	○	정지	한성 탈환의 황은에 감사(永柔 淸溪館에서)
20	26·11·29	○		한성 南別宮에서
21	27·正·1	○		南別宮에서. 그 후 明將 접견
22	27·8·17	○	-	-
23	27·11·11	○		時御所에서. 이날 선조 생일
24	28·正·1	○		時御所에서
25	28·8·17	○	-	明使 李宗城과 함께 거행(南別宮에서)
26	28·11·22	○	문안	時御所에서. 議政府 2품이상·政院, 문안
27	29·正·1	○		
28	29·8·17	정지	-	仁聖王后(萬曆帝의 母) 사망(8·13)
29	29·11·3	○		在京唐官에게 設酌을 명함(10·25)
30	30·正·1	○		
31	30·8·17	○	-	別殿에서
32	30·11·13	○		別殿에서

33	31·正·1	○		왕세자(光海君)·군신을 거느리고 行禮
34	31·11·25	○		別殿에서
35	32·8·17	○	-	正殿에서
36	32·11·6	○		이튿날 선조는 經理 萬世德의 館所에서 동지 축하
37	33·正·1	○		왕세자도 입궁, 行禮
38	33·8·17	○	-	
39	33·11·16	○		南別宮에서
40	34·正·1	○	不受	仁順王后 기일 목욕재계
41	34·8·17	○	-	
42	34·11·27	○	問安	대신 및 2품이상 문안
43	35·正·1	○	問安	대신 및 2품이상 문안
44	35·8·11	○	-	千秋節(후일 泰昌帝)
45	35·11·10	○		權停禮
46	36·正·1	○	問安	政院及 및 백관 문안
47	36·8·11	○	-	千秋節
48	36·8·17	○	-	왕세자·백관을 거느리고 行禮
49	36·11·20	停止		藥房, 望闕禮 權停을 청함(11·18)
50	37·正·1	停止	問安	선조는 貞陵洞 행궁에 체재, 병환
51	37·8·17	○	-	일주일 전에 “17일 望闕禮 있음”(8·10)
52	38·正·1	○		別殿에서
53	38·8·17	○	-	
54	38·11·12	○	○	왕세자, 백관을 거느리고 陳賀禮을 행함
55	39·正·1	○	문안	3공 및 2품이상 문안
56	39·4·26	○		千秋使, 북경으로 출발
57	39·4·29	○		聖節使, 북경으로 출발
58	39·8·17	○	-	
59	39·11·23	停止	權停禮	선조, 건강이 안 좋아 외출 불가(11·21)
60	40·正·1	停止	問安	비로 인하여 대궐 안뜰에 물이 참
61	41·正·1	停止	問安	작년 10월부터 선조 병환. 대신 및 동서반 2품이상·六曹堂上, 문안

* 표의 연월일은 《宣祖實錄》의 해당 연월일조에 의함. 聖節과 千秋節의 경우는 朝賀禮와 會禮宴이 거행되지 않기 때문에 ‘-’로 표시했다.